

제2022-47호 2022년 4월 21일(목)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2-15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1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2-1139호 돌산공원 조성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2
- 여수시 공고 제2022-1175호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 4
- 여수시 공고 제2022-1186호 2022 전담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 공고 알림 5
- 여수시 공고 제2022-1187호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12
- 여수시 공고 제2022-1189호 도로지정공고(중흥동 산 159-1번지) 13
- 여수시 공고 제2022-1191호 도로지정공고(덕충동 1781번지) 14
- 여수시 공고 제2022-1192호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공고(여수공화지구 지역주택조합) 15
- 여수시 공고 제2022-1194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학동 74번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16
- 여수시 공고 제2022-1197호 도로지정공고(오천동 147-4번지) 27
- 여수시 공고 제2022-1198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8
- 여수시 공고 제2022-1210호 2022년도 하반기 소호동동다리 청소원 모집 공고(안) 31

기 타

- 여수시 조례 제1731호 여수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45
- 여수시 조례 제1732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 여수시 조례 제1733호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51
- 여수시 조례 제1734호 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56
- 여수시 조례 제1735호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68
- 여수시 조례 제1736호 여수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73
- 여수시 조례 제1737호 여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100
- 여수시 조례 제1738호 여수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107
- 여수시 조례 제1739호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17
- 여수시 조례 제1740호 여수시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 121
- 여수시 조례 제1741호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132
- 여수시 조례 제1742호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40
- 여수시 조례 제1743호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
- 여수시 조례 제1744호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251
- 여수시 조례 제1745호 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58
- 여수시 조례 제1746호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63
- 여수시 조례 제1747호 여수시 여서문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택지공급 조례 폐지조례 271

회람								
-----------	--	--	--	--	--	--	--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점용·사용 (승인)번호 (허가(승인)일)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사용 장소	허가면적(㎡)	준공검사 확 인 증 교부일자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1-61 (‘21. 7. 28.)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자원개발과)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62-4번지 일원	540	‘22. 4. 18.	화정면 개도 월항 방파제 연장 및 접안시설 정비사업

2022. 4. 18.

여 수 시 장

돌산공원 조성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돌산공원 조성공사』 내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토지 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4. 18.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돌산공원 조성공사
- 나. 사업위치: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335-1번지 일원
- 다. 사업량: 202,806㎡
- 라. 사업기간: 2020. 6. 25. ~ 2023. 12. 31.
- 마. 사업시행자: 여수시장

2. 보상대상: 붙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2. 4. 18. ~ 5. 3. (15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여수시 공원과(녹지행정팀)
-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여수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 시 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보상계획

- 가.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 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협

의 →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보상금 지급

- 협의가 불성립의 경우: 수용재결 → 재결금 지급 및 공탁 → 소유권 이전

나. 보상시기: 2022. 8. ~ 2022. 12.

다. 보상방법: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보상금 계좌 입금(현금보상)

라. 보상액 산정방법

-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

-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추천감정평가 업체명:

토지 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주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일 경우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기 타

가.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를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 보상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공원과(☎061-659-4634)로 문의바랍니다. 끝.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규정에 의하여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을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4월 18일

여 수 시 장(인)

□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 개 설 자 : 백 경 석(롯데프레시)
- 개설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1로 8, 웅천자이 더스위트 상가
- 영업개시 예정일 : 2022년 6월 2일
-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 준대규모점포(가맹점)
- 매장면적 : 190.8m²

2022 전라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 공고

전라남도에서 개인·단체 등 민간에서 만들고 가꾸고 있는 예쁜정원을 발굴·시상하여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관광 브랜드화 기여를 위해 「예쁜 정원 콘테스트」를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2년 4월 19일

여수시장

1. 사업명: 2022 전라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
2. 공모기간: 2022. 4. 19. ~ 5. 27.
3. 신청자격: 정원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개인, 단체, 기업 등
4. 시상: 7개소(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4)
6. 심사기준: 디자인 및 심미성, 식재 및 소재의 다양성, 주변 환경 및 문화와의 정합성 등
7. 신청 및 접수
 - 가. 접수기간: 2022. 4. 19. ~ 5. 27. 주중 09:00~18:00
 - 나. 접수방법: 직접방문 및 이메일
 - 직접방문: 여수시청 산림과(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 망마경기장 1층)
 - 이메일: future486@korea.kr
 - 다. 접수처: 여수시 산림과 산림휴양팀(☎061-659-4609)
 - 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 현장사진(정원/ 8장 이상) 1부.

- 붙임 1. 제1회 전남 예쁜정원 콘테스트 추진 계획 1부.
2. 신청서식 각1부. 끝.

2022 전라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 계획

개인·단체 등 민간에서 만들고 가꾸고 있는 예쁜 정원을 발굴하여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관광 브랜드화 기여

□ 공모개요

- 접수기간 : '22. 4. 19. ~ 5. 27.(2개월간) ※ 접수: 9시~18시(토·일요일 제외)
- 신청자격 : 정원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개인, 단체 등
- 접수처 : 시·군 산림부서 ※ 시·군 담당자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시상 : 7개소(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4)

시 상	총 괄	개인정원	근린정원	훈 격
계	7	-	-	-
대 상	1	1		도 지 사
최우수상	2	1	1	"
우 수 상	4	2	2	"

※ 공모부문 : 개인(주택)정원, 근린정원(카페, 음식점, 종교시설 등)

○ 제출서류

- 전라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 공모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1부
- 정원현장 사진 : 해상도 1,000dpi 이상 이미지 파일 8장 이상

□ 공모절차



□ 심사기준

- ① 디자인 및 심미성, 창작성 및 독창성 ② 식재 및 소재의 다양성
- ③ 주변 환경 및 문화와의 정합성 ④ 전반적인 시공품질 및 완성도
- ⑤ 보존 및 유지관리 상태 ⑥ 공간의 이용행태(지역민 이용 등)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 3명 내외(정원, 조경, 원예, 화훼 등 전문가)
- 평가·심사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심사
 - (1차 서류 심사) 서류 심사를 통해 시상 7개소의 2배수인 14개소 선정
 - (2차 현장 심사) 서류심사 통과 14개소에 대한 현장 심사로 순위 선정
- ※ 서류·현장 심사는 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서류·현장 또는 현장)으로 운영

□ 행정사항

- 총무과 : 도지사 상장 7점(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4) 지원
- 시군 협조사항
 - 예쁜정원 콘테스트 계획 시군 홈페이지 등 활용 적극 홍보
 - 시군 콘테스트 참여 가능 정원 발굴 및 신청 유도
- 추진일정
 - 전라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 신청(신청자→시·군) : '22. 5. 27.까지
 - 시·군 신청지 현장 확인 및 도 진달(시·군→도) : '22. 5. 31.까지
 - 예쁜정원 평가위원회 현장 평가 및 우수 정원 선정 : '22. 6. 17.까지
 - 예쁜정원 콘테스트 우수 정원 시상 : '22. 7. 중

◆ 전라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 선정 정원 인센티브

- ▶ 도 민간정원 등록 기회 제공(등록요건을 갖출 경우)
- ▶ 콘테스트 당선 상장, 인증 현판 지급, 사진 전시 및 홍보

2022 전라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 공모 신청서				
신청분야		개인정원 / 근린정원		
정원명				
소재지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정원 소개서		<p>※ 내용과 구성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를 위한 정원사진에 대한 부연 설명 자료로 활용되오니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p> <p>※ 지면이 부족할 경우, 5매 이내의 별지를 첨부하여 작성 가능합니다.</p> <p>※ 참가와 관련하여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 등이 발각될 경우 실격 처리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p>		
신청일		2022년 5월 일		
<p>「2022 전라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_____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p>				

개인정보 수집 · 활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여수시는 「제2회 전남 예쁜정원 콘테스트」 신청자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내역

수집 · 이용항목	수집 · 이용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교육생 모집, 참여자격 확인, 교육운영, 만족도 조사	교육 종료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류심사를 할 수 없어 수강생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감정보 처리내역 : 해당없음

3.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내역 : 해당없음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 전라남도, 여수시

5. 법령에 의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항목 : 해당없음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 개인정보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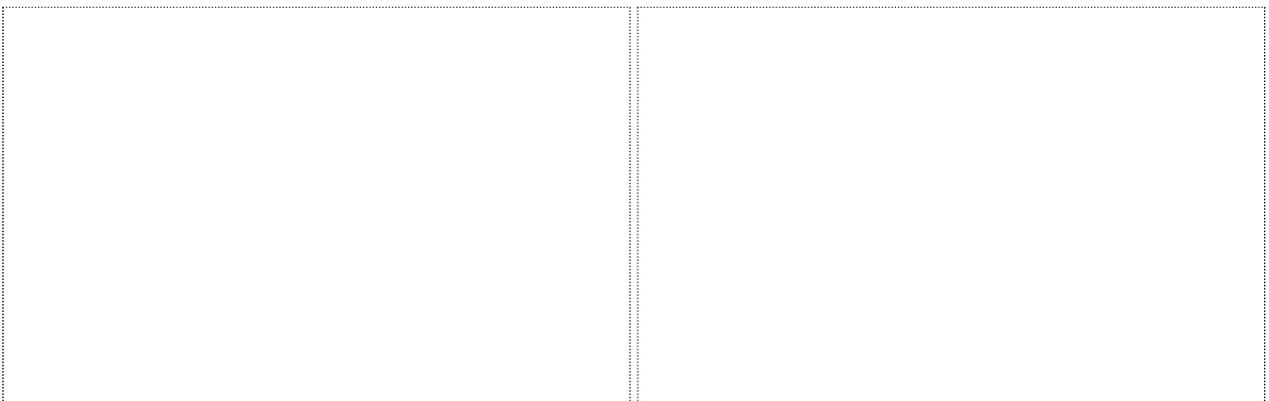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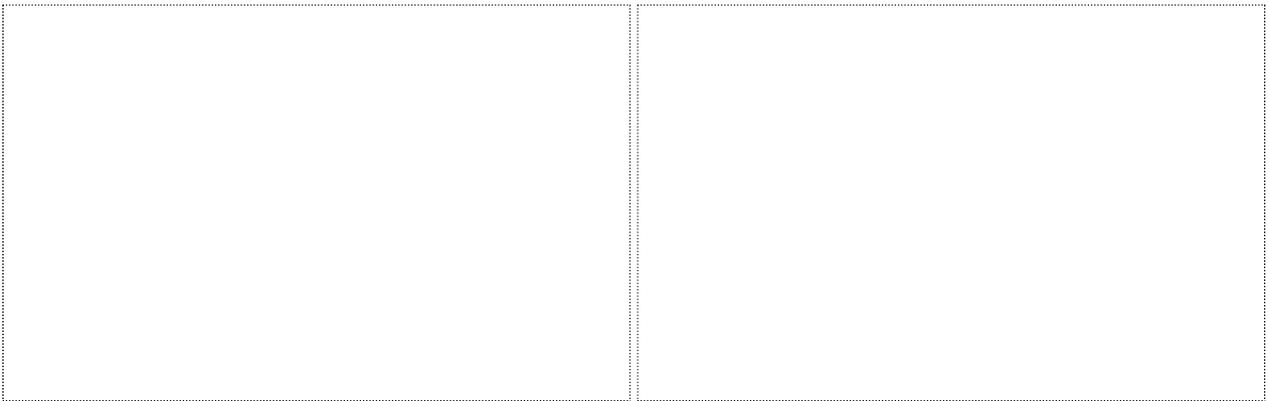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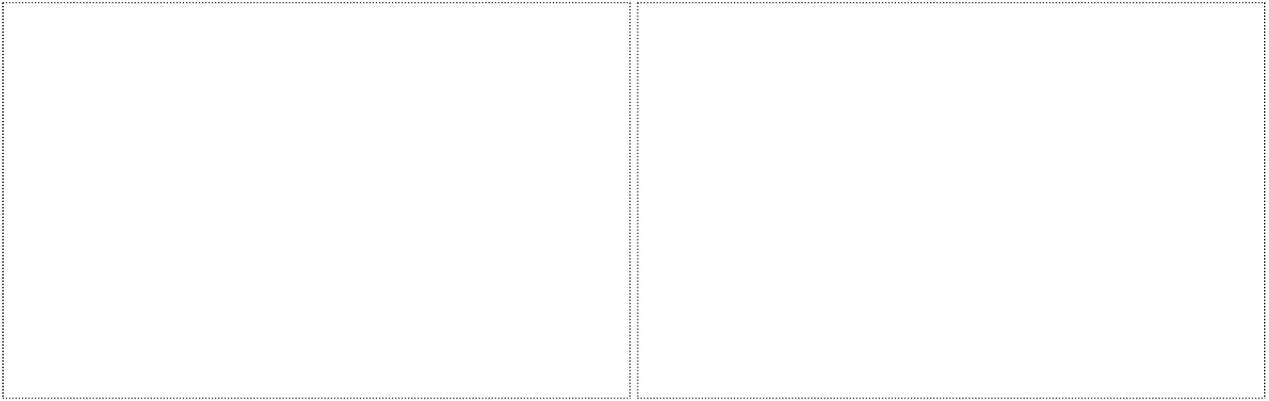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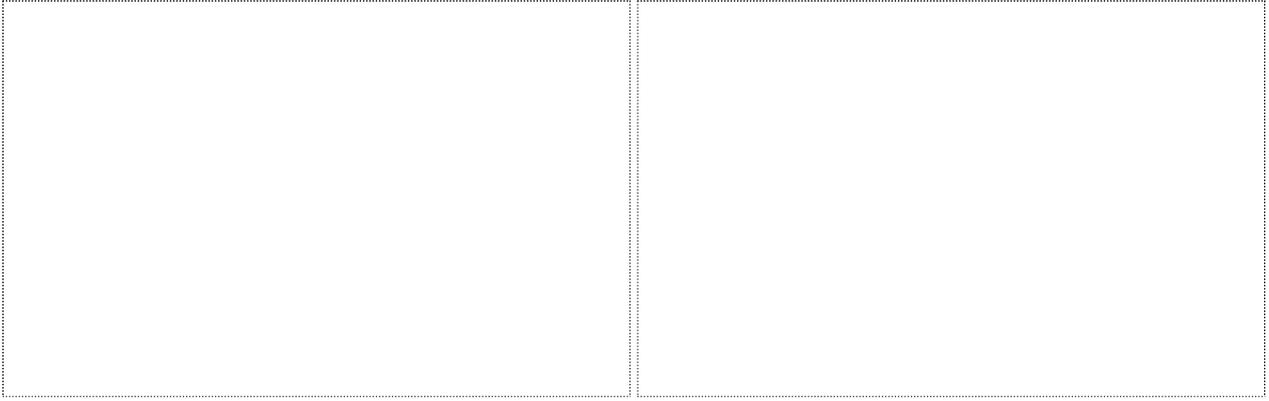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2021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

예쁜정원 콘테스트 현장 사진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 양식업 면허 처분 내역 ◆

면허 번호	양식업의 종류	시설 방법	면적 (ha)	양식장 위치	면허기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양식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11910	패류 양식업	수하식	5.00	화양 용주	2022.05.20. 2032.05.19.	500	여수시 신월로 561-8, **동 ****호 (금호아파트)	정**외3	10927 재개발
11911	패류 양식업	바닥식	5.00	화정 만월도	2022.06.12. 2032.06.11.	-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자매어촌계	10928 재개발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2. 04. 19.

여 수 시 장

도로지정 공고

여수시 중흥동 산 159-1번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관련지번 및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중흥동	622	전	120	120	도로대장 참조 (산업지원과 비치)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산업지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산업지원과 (061-659-37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4. .

여 수 시 장

도로지정 공고

여수시 덕충동 1781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제 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덕충동 1781번지	15.5	0.4~0.7	10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4. 19.

여 수 시 장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공고

여수시 공화동 360번지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에 따라 인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9.

여 수 시 장

1. 조 합 명 : 여수공화지구 지역주택조합
2. 사무소위치 : 여수시 공화남3길 19-1, 3층(공화동)
3. 설립인가일 : 2020. 9. 21.
4.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동 360번지 외 176필지
5. 조합원수 : 333명

※ 조합원 제명(1명), 충원(31명), 상속(1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우리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2년 4월 19일

여수시장

1. 공 고 명 :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대상사업 내역

가. 사 업 명 : 여수시 학동 74 주상복합 신축공사

나. 건 축 주 : 한국자산신탁(주)

다. 시 공 자 : 쌍용건설(주)

라. 감 리 자

- (주)지디에이건축사사무소

- 서현건축사사무소

마. 사업개요

1) 위 치 : 여수시 학동 74번지 일원

2) 대지면적 : 2,811.5㎡

3) 연 면 적 : 43,514.03㎡

4)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 5) 규 모 : 지하5층, 지상 35층 / 2동
 - 6) 공사기간 : 2022. 4. 1. ~ 2025. 7. 13.(39개월)
 - 7) 순공사비 : 68,310,266,662원 (VAT 포함)
 - 8) 안전점검 비용 : 115,467,447 (VAT 포함)
- 바. 건축허가일 : 2021. 6. 10.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 1) 건축물(1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3회 및 초기점검
- 2)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2회
- 3) 건설기계¹⁾의 정기안전점검 : 각 기계별 2회
- 4) 가설구조물²⁾의 정기안전점검 : 각 구조물별 2회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여수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1-1688호

나. 결정방법

-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별표1]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1)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 타워크레인

2) 합벽지지대. 높이 5m 이상 동바리 지보공,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30점	평점=평가점수 X 30%
수행가격	70점	
합 계	100점	1억 이상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2. 4. 20.(수) 09:00 ~ 4. 26.(화)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2]
-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3] **※ 부가세 포함 금액**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가격제안 최저가 : $115,467,447 \times 87.745\% = 101,316,911$ 원 VAT포함)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4) 서약서 1부[서식4]

6. 개찰일시 : 2022. 4. 28.(목) 이전 개별 통보(우선순위 2개 업체만 통보)

7.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2개 업체에 한함.)

가. 제출기간 : 2022. 5. 3.(화) 16:00까지

나. 제출서류(사실확인 서류)

-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 2)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과 기존건축물 안전점검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
-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4)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 제출.

※ 사실 확인 서류는 [서식 2]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1) 좌측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분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색지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2. 5. 6.(금) 10:00~ 17:00까지

나. 열람방법 :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

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 점 처리합니다.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1종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내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자기평가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4. 서약서 1부. 끝.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 사업명		
직무분야	건축분야 [] 종합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4. 서약서 1부 [서식4] 	수수료 없음
----------------------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 참여 기술인	50	소 계		50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40	소 계		4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25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점 × 개소		15									
3. 점검·진단 평가결과	5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5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 A- 이상		5									
		· BBB- 이상		4									
		· BB- 이상		3									
		· B- 이상		2									
		· CCC+ 이하		1									
		· 미제출		0									
총 계	10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25%;">1억원 이상</th> <th style="width: 25%;">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th> <th style="width: 35%;">5천만원 미만</th> </tr> <tr> <td>배점률</td> <td>30%</td> <td>20%</td> <td>10%</td> </tr> </table>			구 분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배점률	30%	20%	10%	
구 분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배점률	30%	20%	10%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2. 수행가격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제안가격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70	80	90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65	75	85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60	70	80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55	65	75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50	60	70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45	55	65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40	50	60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35	45	55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30	40	50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25	35	45	
	· 예정가격 11번째 근접	20	30	40	
	· 예정가격 12번째 근접	15	25	35	
	· 예정가격 13번째 이하	10	20	30	

-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 A기관 : 100만원, B기관 : 100만원, C기관 : 110만원, D기관 : 120만원
 → C기관 : 70점, A기관 : 65점, B기관 : 65점, D기관 : 60점
-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절대값이 같을 경우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에 우선순위 부여.
-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3. 배점기준

구분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비고
사업수행능력	30점	20점	10점	배점 = 총계 X 배점률
입찰가격	70점	80점	90점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가격내용	사업명			
	제안가격	금	원정(₩	원정) ※부가세포함
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도로지정 공고

여수시 오천동 147-4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계	4.5		3.0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여수시 오천동 147-4번지	4.5	4	3.0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4. .

여 수 시 장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말소일자 : 불임참조
3. 공고기간 : 2021. 04. 19. ~ 5. 3.(15일간)
4. 공고장소 :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5.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불임참조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의 부존재(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불임참조)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 건축물관리팀(☎061-659-41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19.

여 수 시 장

[붙임]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내용

연 번	대지위치	대장상소유자		건축물대장 현황				말소 일자
		성명	주소	구분	구조/지붕	용도	연면적 (㎡)	
1	여수시 둔덕동 138	한창*	여수시 둔덕동 138	1층/1동	목조/슬레이트	주택	55.96	2022.3.17.
2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833	박현*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833	1층/1동	목조/슬레이트	주택	25.2	2022.3.29.
3	여수시 광무동 761	김용*	여수시 광무동 761	1층/1동	목조/함석	주택	23.86	2022.4.13.
4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335	이기*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335	1층/2동	목조/스레트 벽돌/스레트	주택 창고	77.88	2022.4.19.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_____)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2022년도 하반기 소호동동다리 청소원 모집 공고(안)

2022년도 하반기 소호동동다리 및 소호요트마리나 청소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일

여 수 시 장

1 공고 및 원서접수

- 가. 공고기간 : 2022. 4. 21.(목) ~ 4. 28.(목) (7일간)
- 나. 접수기간 : 2022. 4. 26.(월) ~ 4. 28.(목) 09:00~18:00
- 다. 접 수 처 : 여수시청 국동임시별관(신월로 648), 4층 해양항만레저과(연안관리팀)
-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우편접수, 전자우편(jeondg52@korea.kr) 접수
 -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우편접수는 2022. 4. 28.(목) 소인분까지 마감임
 - ※ 전자우편접수는 2022. 4. 28.(목) 18:00까지 마감임

2 채용 및 근무조건

채용신분	채용예정부서	채용예정인원	근무기간
기간제근로자	해양항만레저과	1명	2022. 5. 3. ~ 12. 31.(약 8개월)
			근무조건
			휴일 포함 주5일/ 1일 4시간/ 탄력적 운영 (08:00~12:00/14:00~18:00)

보수	기타
일 40,000원 (생활임금 일 3,360원 포함)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한 금액이며 보수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에 따름

※ 2022년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9,160원/시간) 적용

3

직무기술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호동동다리 및 소호요트마리나 환경미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 화장실 환경미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	---

필요 역량	○ (공통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시민지향마인드
--------------	------------------------------

관련분야 : 소호동동다리 및 소호요트마리나 청소원		
응시 자격요건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마감일 기준 만 55세 이상 업무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로 접수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여수시로 되어 있는 자 (만 55세 : 1966. 6. 4.이전 출생자)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근거: 고령자고용법 제16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2호)
	경력	○ 해당없음
	학위	○ 해당없음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 장애인

※ 가산점 부여 기준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서류, 면접 각각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서류, 면접 각각 적용)	
장애인	10%	

4

응시제한

- 가.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또는 회피하여 공정한 채용시험을 방해하는 등 비정규직 채용 응시제한을 받은 자(해당 응시일을 기준으로 3년간 응시 제한)

5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및 평가표에 따른 서면심사. 단, 응시인원이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소수점은 올리며 전부 합격처리)

서류전형 기준					
① 자기소개서					
점수	4점	8점	12점	16점	20점
내용	4개 평가 지표 중 어떤 것도 잘 드러나지 않음	4개 평가 지표 중 1개가 명확히 드러남	4개 평가 지표 중 2개가 명확히 드러남	4개 평가 지표 중 3개가 명확히 드러남	4개 평가 지표 모두 명확히 드러남
② 경험 및 경력기술서					
점수	0점		6점	12점	
내용	5개 평가 지표 중 어떤 것도 잘 드러나지 않음		5개 평가 지표 중 1개가 명확히 드러남	5개 평가 지표 중 2개가 명확히 드러남	
점수	18점		24점	30점	
내용	5개 평가 지표 중 3개가 명확히 드러남		5개 평가 지표 중 4개가 명확히 드러남	5개 평가 지표 모두 명확히 드러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4. 29.(금) 홈페이지공고 및 개별 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2022. 5. 2.(월) 11:00 예정 * 일정 변동 시, 개별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면접시험 평정표

평가항목(5개항목)	점수	비고
계	50점	
가. 공공업무 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라.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 면접시험 시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중” 이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중” 이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서류전형 심사점수와 면접 심사기준표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라. 최종합격자 : 2022. 5. 2.(월)예정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지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양식을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1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붙임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다. 경험 및 경력기술서 1부(붙임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마.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기준으로 생년월일 및 현재 주소가 나오게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바. 시청 내 공직자 찬인척 확인서 1부

(시청 내 공직자 찬인척 관계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미제출 또는 회피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됨)

사.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경험 및 경력기술서 기재내용 증명자료)

※ 경력증명서에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증빙자료 미제출시 해당 경력(자격) 인정 안함

※ 양식은 우리 시 홈페이지 www.yeosu.go.kr 에서 내려 받아 작성 가능함

8

기타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 스스로 기재된 사항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다.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채용 선발을 위해 여주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확인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미제출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해당 채용 합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해당 응시일로부터 3년간 여주시 비정규직 채용 응시에 제한됩니다.
- 라.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되 학위 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서류는 공고일 전 기준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여부 확정된 날의 14일 이후부터 구직자의 요구 시 30일 이내에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6개월 후 파기합니다.
-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사.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해양항만레저과 연안관리팀(☎ 061-659-39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채용분야		접수번호	미기재
-------------	--	-------------	-----

1.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지원직무	
현 주 소	도로명주소 번호 앞까지만 기재(동호수 등 세부내역은 미기재)		
연 락 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가점항목	<input type="checkbox"/> 취업지원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해당자만 체크)		

2. 교육사항(1)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		
교육 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교육사항(2) *지원자격 요건상 학위 취득이 필수적인 경우		
전공분야	학위 취득일	학위 종류
00학	0000년 00월 00일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3. 자격사항 *직무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기입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4. 경력사항 *직무관련 경력사항만 기입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역
<input type="checkbox"/> 경험 <input type="checkbox"/> 경력				

직무관련 주요내용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응시원서 등 제반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뒷면>

1.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기재착오 또는 누락은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2. 인적사항은 서류전형을 위한 필수정보이며, 나머지 항목은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3. '제반서류'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성요령 】

- ① 응시원서 : 접수번호를 제외하고 인적사항은 필수로 기재하되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하며 응시자 이름과 (인) 부분에 서명하여 제출
- ② 이력서 : 인적사항 및 해당사항 전부 입력
- ③ 자기소개서 : 본문 안 작성요령 확인
- ④ 경험 및 경력기술서(해당분야) : 본문 안 작성요령 확인
- ⑤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동의 체크 및 본인 서명
- ⑥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확인서 : 친인척 기준을 확인한 후 반드시 기입

【 붙임서류 】

1.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생년월일 및 현주소만 나온 자료)
 2. 경력증명서 1부(경험 및 경력기술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붙임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입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이 력 서

(1쪽)

<필수>			
성 명	(한글)		
주 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 요 경력사항	회사명	담당 업무(직무내용)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자격증 및 특기사항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취 득 일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기타실적, 능력 등)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등급	장애인등록번호
취업대상자 및 저소득층 여부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번호작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취업대상자 및 저소득층여부는 해당항목에 ‘○’ 로 표시 후 증빙자료 첨부

자기소개서

(2쪽)

○ 각 항목에 대하여 600자 이내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칸을 별도로 눌러 활용가능>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본 항목에 따라 기술하고
지원동기, 성격 및 가치관, 업무의 전문성, 앞으로의 다짐 등 자신의 생각
등이 잘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작성 분량은 2매 이내로 하고 학교명, 출신지, 예전 직장, 부모직업
등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거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갑작스럽게 발생한 주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활용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3쪽)

3. 과거 업무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과 이견이 있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와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원자 본인이 지원한 업무에 대해 가장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와 근거를 제시하고 앞으로의 다짐에 대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 및 경력기술서

(4쪽)

○ 작성요령

- 이력서에 기재한 직무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술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대리 작성, 허위 작성 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음

1) 소속 조직 / 본인이 맡은 주요 역할

2) 주요 활동 내용 및 성과(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을 나누어 작성 기재)

3) 활동 성과를 높이기 위해 본인이 기울인 노력과 행동

4) 본인의 성과(업무 추진)으로 인해 조직에 기여한 내용 및 기여 정도

5) 지원분야 업무 수행 시, 본인의 강점과 기여할 수 있는 측면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기관	여수시
이용 목적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공직자 이해관계 확인 포함)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2년)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제공거부에 따른 불이익	채용 진행에 필요한 필수 개인정보 미 제공 으로 당해 채용시험 지원 불가

2022. . .

성 명

(서 명)

여수시장 귀하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관계 확인서

○ 성 명 :

○ 응시번호 :

○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현황

* 배우자, 본인의 4촌 이내 친족,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별첨 참조)

연번	친인척 성명	친인척 직급(생년월일)	본인과의 관계
1			
2			
3			
해당 없음			

상기 본인은 공정한 채용시험 응시를 위하여 시청 내 친인척현황 조사에 동의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채용이 취소되어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으며 해당응시일로부터 3년간 여수시 비정규직 채용에 응시가 제한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확인하며 서약합니다.

2022. . .

작성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작성 대상 친족 기준

구분		0촌	1촌	2촌	3촌	4촌
본인	친가	부부	○ 부모 ○ 자녀	○ 조부모 ○ 형제 및 그 배우자	○ 백부, 숙부, 고모 및 그 배우자 ○ 형제의 자녀(조카)	○ 백부, 숙부, 고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외가			○ 외조부모	○ 외백부, 외숙부, 이모 및 그 배우자	○ 외백부, 외숙부, 이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배우자	친가		○ 부모	○ 조부모 ○ 형제 및 그 배우자	○ 백부, 숙부, 고모 및 그 배우자 ○ 형제의 자녀(조카)	○ 백부, 숙부, 고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외가			○ 외조부모	○ 외백부, 외숙부, 이모 및 그 배우자	○ 외백부, 외숙부, 이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 월 21 일

여 수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박현식



여수시 조례 제1731호

붙임 여수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여수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 월 21 일

여 수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악현익 인

여수시 조례 제1732호

붙임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시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 (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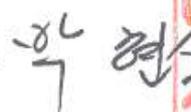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특별휴가) ① ~ ⑨ (생략) <u><신 설></u>	제18조(특별휴가) ① ~ ⑨ (현행과 같음) <u>⑩ 시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u>

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 월 21 일

여 수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여수시 조례 제1733호

붙임 여수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733호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22 년 6월 30일까지”를 “2024년 12월 31까지”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150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란 300원을 말한다.

③ (생략)

-1,000원-----.

③ (현행과 같음)

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 월 4 일

여 수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박 현 수 인



여수시 조례 제1734호

붙임 여수시 행정정보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여수시 정보공개 조례”로 한다.

제1조 “이 조례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시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여수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여수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시민의 공개 청구 및 시장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제1항 “집행기관이”를 “여수시가”로, 제1항 및 제2항 “행정정보”를 “정보”로 한다.

제4조 “집행기관의 의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제1항 “집행기관은 행정정보를”을 “시장은 정보를”로 하며, 제1항 및 제2항 “행정정보”를 “정보”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 “집행기관”을 “시장”으로 한다.

제5조 중 “행정정보의 공표”를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 “집행기관”을 “시장”으로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행정정보”를 “정보”로 “의하여”를 “따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제1항 “범위, 공개주기·시기 및 공개방법 등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를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7호 “5천만원이상의”를 “5천만원 이상의”로 “300만원이상의”를 “300만원 이상의”로, 8호 “설계변경시”를 “설계변경 시”로 9호 “300백만원이상”을 “300만원 이상”으로 “1천만원이상”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제3항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행정정보”를 “정보”로 한다.

제6조제1항 “집행기관에”를 “시장은”으로 한다.

제7조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하고, “범위안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하며,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하며,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 1호 중 “집행기관의 장”을 “시장”으로 하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3호 “기타 행정정보공개제도의”를 “그밖의 정보공개제도의”로 하며, “집행기관의 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심의회는 위원과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공개대상업무 담당국·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 학계 등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제1항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호 “여수시 부시장,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 2호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여수시의회의원 1명”, 나.“학계 등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제2항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를 제3항 “심의회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시의회”를 “여수시의회”로 하며, “소속공무원중에서”를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의 규정에”를 “에도”로 “의회의원”을 “여수시의회의원”으로 “임기내로”를 “임기 내로”로, “재직중인”을 “재직 중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집행기관의 장”을 “시장”으로 하며, 제3항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1인”을 “1명”으로 하고, 제2항 “민원행정담당”을 “정보공개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 “때”를 “경우”로 하고,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등으로부터”를 “등의”로 한다.

제15조 “아니되며”를 “안되며”로 한다.

제16조제1항 “작성 비치”를 “작성·비치”로 한다.

제17조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1호 “때”를 “경우”로 하며, 제2호 ‘할 때’를 “되는 경우”로 한다.

제18조 “시소속”을 “시 소속”으로 하며, “범위안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19조 “평가 및 보고 등”을 “평가 등”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장”을 “시장”으로 하고, 제2항 “시장은 집행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개한다.”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조례에 의하여”를 “다른 조례에 따라”로 “아니하다”를 “않는다”로 하며, 제2항 “집행기관이”를 “여수시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시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여수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집행기관</u>”이라 함은 여수시 및 여수시 소속 행정기관, 여수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을 말한다. 2. “<u>청구인</u>”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3. “<u>정보</u>”라 함은 여수시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4. “<u>위탁기관</u>”이라 함은 여수시조례 등에 의하여 사무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여수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사무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수탁 운영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여수시 정보공개 조례</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여수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시민의 공개 청구 및 시장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u>집행기관이</u> 보유·관리하는 <u>행정정보</u>는 소중한 공공자산으로서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민의 청구 없이도 주요 문서 등의 사전 공개대상 <u>행정정보</u>를 확대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u>여수시가</u> ----- 정보는 ----- ----- -----.</p> <p>② ----- ----- ----- 정보-----.</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u>집행기관은</u> <u>행정정보</u>를 시민이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u>행정정보</u>를 확대하고 <u>행정정보</u>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u>집행기관</u>은 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u>행정정보</u> 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③ <u>집행기관</u>의 장은 정보공개 확대와 소통 증대를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한다.</p>	<p>제4조(시장의 책무) ① <u>시장은</u> 정보를 ----- ----- ----- 정보 ----- 정보----- -----.</p> <p>② <u>시장</u>----- ----- 정보 ----- -----.</p> <p>③ <u>시장은</u> ----- -----.</p>
<p>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u>집행기관</u>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u>행정정보</u>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주기·시기 및 공개 방법 등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p>	<p>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u>시장은</u> ----- 어느 하나에 ----- 정보 ----- ----- -----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정기</p>

현행	개정안
<p>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당해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p> <p>2. ~ 7. (생략)</p> <p>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6. (생략)</p> <p>7. 총 공사비 5천만원이상의 공사, 300만원이상의 구매·용역 계약사항</p> <p>8. 제7호의 공사의 설계변경시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한 증액된 공사비</p> <p>9. 300만원이상 물품구매와 1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사항</p> <p>10. ~ 13.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 따라 ----- 정보로 ----- ----- 그렇지 않다.</p> <p>1. 해당 ----- -----</p> <p>2. ~ 7.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정보 ----- ----- 완료되었을 ----- ----- ----- 따라 ----- 정보로 ----- ----- 그렇지 않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5천만원 이상의 ----, 300 만원 이상의 -----</p> <p>8. ----- 설계변경 시 ----- -----</p> <p>9. 300만원 이상 ----- 1천만원 이 상 -----</p> <p>10. ~ 13. (현행과 같음)</p> <p>③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정보의 ----- ----- -----.</p>

현행	개정안
<p>제6조(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제도) ① 집행기관에 신청·접수된 인·허가, 면허 등의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상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7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 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 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6조(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제도) ① <u>시장</u>은 ----- ----- ----- -----.</p> <p>② 제1항에 따른 ----- ----- -----.</p> <p>제7조(비용의 부담) <u>정보의</u> ----- ----- <u>범위 안에서</u> ----- ----- ----- <u>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u> ----- ----- ----- 「<u>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u>」 ----- <u>따른다</u>.</p>
<p>제8조(정보공개 심의회 설치) (생략)</p> <p>1. 집행기관의 장이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요청한 사항</p> <p>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u>이의신청</u></p> <p>3. 기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p>	<p>제8조(정보공개 심의회 설치) (현행과 같음)</p> <p>1. <u>시장</u>이 ----- ----- -----</p> <p>2. -----에 따른 <u>이의신청</u></p> <p>3. <u>그 밖의 정보</u>----- ----- <u>시장</u> ----- -----</p>

현행	개정안
<p>제9조(심의회 운영) ① <u>심의회는 위원과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공개대상업무 담당국·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 학계 등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② <u>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u></p> <p>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생략)</p> <p>② <u>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u></p> <p>제12조(회의) ① <u>심의회 회의는 집행기관의 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u></p>	<p>제9조(심의회 운영) ① <u>심의회 위원장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u></p> <p>1. 여수시 부시장,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p> <p>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p> <p>가. 여수시의회 의원 1명</p> <p>나. 학계 등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③ <u>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u></p> <p>제10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여수시의회 ----- 소속공무원 중에서 -----</u> <u>-에도 ----- 여수시의회 의원인 --</u> <u>----- 임기 내로 -----</u> <u>----- 재직 중</u> <u>인 기간으로 한다.</u></p> <p>제12조(회의) ① ----- <u>시장</u> ----- ----- -----.</p>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u>그렇지 않다.</u></p>
<p>제13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u>1인</u>을 둔다.</p> <p>② 간사는 민원지적과장이 되며 서기는 <u>민원행정담당</u>이 된다.</p>	<p>제13조(간사 등) ① ----- ----- <u>1명</u>-----.</p> <p>② ----- -- <u>정보공개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u></p>
<p>제14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u>기타</u>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u>등으로부터</u>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14조(의견청취 등) ----- ----- <u>경우에</u> ----- <u>그 밖의 이</u> ----- <u>등의</u> -----.</p>
<p>제15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u>아니되며</u>,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p>	<p>제15조(위원의 책무) ----- ----- ----- <u>안되며</u>, ----- ----- .</p>
<p>제16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u>작성 비치</u>하여야 한다.</p>	<p>제16조(회의록) ① ----- <u>작성·비치</u> ----- .</p>
<p>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u>각호</u>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제17조(위원의 해촉) ----- <u>각호</u> ----- <u>경우</u>----- -----.</p>

현행	개정안
<p>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p> <p>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p> <p>제18조(수당 및 여비) <u>시소속</u>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9조(평가 및 보고 등)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의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시민의 만족도 및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p> <p>②시장은 집행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개한다.</p> <p>제20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집행기관이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p>	<p>1. ----- ----- <u>경우</u></p> <p>2. ----- -----<u>되는 경우</u></p> <p>제18조(수당 및 여비) <u>시 소속</u> ----- ----- <u>범위 안에</u> <u>서</u> ----- ----- ----- .</p> <p>제19조(평가 등) <u>시장은</u> ----- ----- ----- ----- -----.</p> <p>② <삭 제></p> <p>제20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 ----- <u>다른 조례에 따라</u> ----- ----- ----- <u>정보</u> ----- <u>않는다.</u></p> <p>② <u>여수시의</u> ----- ----- ----- -----.</p>

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 월 2 일

여 수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박 현



여수시 조례 제1735호

붙임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조례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를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수 하여야”로 한다.

② 국내외 투자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처분하는 경우 시장은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여수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④ 시장에게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은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 및 교육훈련 인원을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미달인원과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u></p> <p>제3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 ③ (생략)</p> <p>④ <u>국내외 투자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시장은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u></p> <p>⑤ <u>시장으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여수</u></p>	<p><u>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u></p> <p>제3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삭 제></u></p>

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39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 8. (생략)

<신설>

<신설>

④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9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

1. -----
----- 5년 -----

2. ~ 8. (현행과 같음)

② 국내외 투자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처분하는 경우 시장은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부터 임대료를 지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원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은 임대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여수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④ 시장에게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은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 및 교육훈련 인원을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미달인원과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수 하여야 -----
-----.

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 월 21 일

여 수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박 현 

여수시 조례 제1736호

붙임 여수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1부.

여수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박물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무형의 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여수시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부, 기탁,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收藏)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부”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을 박물관에 일정기간 동안 맡기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보관하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
5. “출납”이란 유물의 반입 및 반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6. “대여”란 유물을 다른 기관 등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7. “열람”이란 유물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8. “복제”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3조(유물의 수집)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적·문화적·과학적으로 수집·보존·전시할 가치가 있고, 교육 등을 위해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유물로 수집한다.

제4조(유물의 구입) ① 시장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유물수집 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와 제14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평가범위 내에서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② 유물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구입 계획 수립
2. 구입 방법 및 절차를 여수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 대상 유물 선정
5. 평가 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확인 및 가격 평가
6. 구입 결정
7. 구입 예정 유물 화상 공개 및 매매계약

③ 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한다.

④ 시장이 경매를 통해 유물을 구입하거나,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현지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한다.

⑤ 시장은 유물 구입의 심의 및 계약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매도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유물임시보관증 : 별지 제2호서식

2. 유물매도확약서 : 별지 제3호서식

3. 유물매도목록 : 별지 제4호서식

제5조(유물 등의 기부)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유물 등의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할 때에 수증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여수시 수증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여수시 수증심의위원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의2에 따라 구성·운영하며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박물관에 유물 등을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증 여부가 결정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부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6조(유물의 기탁) ①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탁을 받은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탁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유물을 반환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서명해야 한다.

제7조(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기부·기탁 등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물의 소유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유물이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제3조에 따른 수집 대상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제8조(유물의 반환) 시장은 평가를 받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기부·기탁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인계인수증에 확인·서명해야 한다.

제9조(유물관리관 등 지정) ① 시장은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둘 수 있으며, 유물관리관은 박물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유물출납원은 박물관 업무 담당 학예연구사로 한다.

②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제10조(유물의 관리) ① 시장은 유물이 분실·훼손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 중이거나 또는 제12조에 따라 대여한 유물을 제외한 모든 유물을 수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유물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유물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유물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2. 유물카드 : 별지 제12호서식

⑤ 시장은 유물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유물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수장고 출입) ①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물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유물관리관 또는 유물출납원이 지정하는 사람의 입회하에 출입해야 한다.

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
2. 흡연, 음주 등의 행위
3. 그 밖의 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④ 유물관리관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2조(유물의 대여 등) ①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의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박물관·기념관·교육기관 등이 전시·교

육을 목적으로 할 때

3.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② 유물을 대여하고자 할 때와 열람·복제하고자 할 때는 각각 별지 제14호·제16호 서식으로 신청해야 하며, 유물을 대여해 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유물대여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물을 열람 및 복제하려는 사람은 해당 유물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임의로 운반·훼손해서는 안 된다.

④ 유물을 대여하거나 복제하여 이용하는 사람은 그 자료가 여수시 박물관 소유의 유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제13조(유물수집 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수집대상 유물에 대한 사전조사와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등을 위하여 여수시 유물수집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범위 선정

2.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3. 그 밖의 유물 수집에 관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박물관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전원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제4항의 의결 결과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유물 예비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14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4조(유물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구입대상 유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물 또는 자료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대한 평가
2. 유물 또는 자료의 진위여부 확인 및 적정 가격에 대한 평가
3. 그 밖의 시장이 유물 구입에 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재 및 유물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해당 유물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구입대상 유물이 있는 경우 마다 새로 구성하며, 그 존속기한은 해당 유물의 평가가 종료된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평가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의결결과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유물 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⑧ 시장은 평가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유물평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5조(위원회 수당 등) 실무위원회에 자문하는 외부 전문가와 평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호

기 부 증 서

_____ 귀하

귀하의 소중한 역사자료를 여수시에 기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이 자료의 활용과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1. 품 명 :

2. 수 량 : 건 점

년 월 일

여 수 시 장

【별지 제7호서식】

기탁신청서						
기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탁사유						
특이사항						
연번	자료명칭	시대	수량	크기	특징	비고
계	건 점					
사진						
<p>위와 같이 「여수시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여수시의 연구·전시 등에 활용하고 공익을 증진할 자료를 기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기탁인 : (인)</p> <p style="text-align: right;">생년월일(성별) :</p> <p style="text-align: right;">주소 :</p> <p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 :</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top: 20px;">여수시장 귀하</p>						

제 호

수탁증서

_____ 귀하

귀하의 소중한 역사자료를 여수시에 기탁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수탁하고 수탁기간 종료시 반환하겠습니다.

※ 수탁물품의 원활한 반환을 위하여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될 경우 시장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품 명 :

2. 수 량 : 건 점(내역별첨)

3. 기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여 수 시 장

【별지 제9호서식】

기탁유물반환수령증						
기탁자 인적사항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자료목록						
기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탁사유						
특이사항						
연번	자료명칭	시대	수량	크기	특징	비고
<p>여수시에 기탁한 자료를 「여수시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성명 (인)</p> <p>여수시장 귀하</p>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유 물 대 장

유물번호	명 칭		수 량		국적/시대		재 질		사진
	입수 일자/연유/처/가격				출토(소)지				
	크 기								
	특 징								
유물번호	명 칭		수 량		국적/시대		재 질		사진
	입수 일자/연유/처/가격				출토(소)지				
	크 기								
	특 징								
유물번호	명 칭		수 량		국적/시대		재 질		사진
	입수 일자/연유/처/가격				출토(소)지				
	크 기								
	특 징								
소 계 : 건 점					누 계 : 건 점				
					총 계 : 건 점				

【별지 제12호서식】

유 물 카 드				
유물번호	명 칭			수 량
		국 :	영 :	
문화재지정	재 질		시대/연대	
	출토지		작자/제작	
입수연유				
보존처리	기 간 :	내 용 :		
격납일자		격납처		
크 기				
특 징				
상세설명				
참고자료		원판번호		
사 진				

【별지 제13호서식】

수 장 고 관 리 일 지				
년 월 일 요일		담 당 자	유물출납원	유물관리관
출 입 내 역				
수장고명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사유	비고
특기사항				

【별지 제14호서식】

유 물 대 여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기관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소장품번호	소장품명	소장품수량	소장품상태	비 고
대 여	기 간		반환예정일	
	목 적			
	수 량			
	운 반 방 법			
<p>「여수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귀 전시관의 소장품 대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 (인)</p> <p>여수시장 귀하</p>				

【별지 제15호서식】

유 물 대 여 허 가 서				
신 청 인	성 명 (기관명)		생년월일	
	주 소			
소장품번호	소장품명	소장품수량	소장품상태	비 고
대 여	기 간			반환예정일
	목 적			
	수 량			
	운 반 방 법			
<p>귀하(기관)가 신청하신 소장품 대여의 건을 허가하오니 모든 자료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여 수 시 장</p>				

【별지 제18호서식】

유 물 평 가 서																	
평가 제		호															
대상 유물	명 칭			수 량	점												
	크 기 (cm)	재 질	금속 <input type="checkbox"/> 도토 <input type="checkbox"/> 광물 <input type="checkbox"/> 피목지직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평가 사항	시 대	전통 <input type="checkbox"/> () 근현대 <input type="checkbox"/> ()		사 진													
	작 자																
	보존상태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input type="checkbox"/>															
	수집가치	유 · 무															
	평가금액	(₩) 원															
	구입추천 /배제사유																
<p>위와 같이 「여수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7항에 따라 심의 평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유물평가위원회</p> <table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33%;">위원</td> <td style="width: 33%;">(인)</td> <td style="width: 33%;">위원</td> <td style="width: 33%;">(인)</td> </tr> <tr> <td>위원</td> <td>(인)</td> <td>위원</td> <td>(인)</td> </tr> <tr> <td>위원</td> <td>(인)</td> <td></td> <td></td> </tr> </table> <p style="margin-top: 20px;">여수시장 귀하</p>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 월 21 일

여 수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박현식 인 

여수시 조례 제1737호

붙임 여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1부.

여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여수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추진할 때에 문화적 가치 실현 추구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성별·연령·종교·장애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제4항 각 호의 사항
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3. 문화생태계 조성 및 문화브랜드 형성에 관한 사항
4. 조성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간과 문화도시 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수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추진위원회 기능) 추진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조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제9조(추진위원회 구성 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문화·예술·역사·도시계획·생태·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련분야 대학교수

4.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문화도시업무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용역·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전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장기 불참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0조 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추진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4조(실무위원회) 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여수시 사무의 민

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④ 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홍보·운영 및 센터 인력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3. 그 밖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수탁자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문화도시,”를 삭제한다

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 월 21 일

여 수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박 현 

여수시 조례 제1738호

붙임 여수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여수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및 시책 개발,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증진계획은 「여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여수시 문화예술 중·단기 종합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위원회)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예술인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여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

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여수시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의 지원신청을 받아,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심사 및 보조금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고 있음.
- 향후 지원신청에 의해 선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비용추계가 어려움

3. 작 성 자

- 문화예술과장 김 춘 수

붙임 2 관련 법령

「예술인 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

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2(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보호
 3. 예술인의 복지 증진
 4.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
 5.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체계
 6.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규모 및 조달
 7.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3(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삭제 <2014. 3. 28.>
4. 삭제 <2014. 3. 28.>
5. 삭제 <2014. 3. 28.>
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3 참고 자료

타 지자체 조례 현황 (59개소)

자치단체	법 규 명	제/개정일	비 고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1-12-3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1-11-09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1-09-28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군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2021-09-27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1-08-06	
강원도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1-06-04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1-05-27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1-04-30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21-03-16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1-02-19	
충청북도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1-02-10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0-12-31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0-12-30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0-11-18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2020-11-09	
경기도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0-07-15	
전라북도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0-07-13	
전라남도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0-06-29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9-09-04	
경상남도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9-01-03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8-11-05	
경상북도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7-06-12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6-10-3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1-12-3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1-11-0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1-07-30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1-07-08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1-05-26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2021-04-0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2020-02-07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	2018-10-18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7-05-18	

자치단체	법 규 명	제/개정일	비 고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2-31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1-12-3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1-12-20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2021-09-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1-09-27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1-07-15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1-07-01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1-06-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1-06-10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1-04-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1-03-30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0-11-23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0-10-05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0-09-21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0-06-10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6-07-08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을 빛낸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인 선정 및 지원 조례	2021-03-17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	2021-03-12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1-07-01	
강원도 동해시	동해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1-05-14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0-08-04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9-08-14	
강원도 춘천시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8-11-30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09-28	
강원도 평창군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	2020-12-31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2-02-03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1-10-29	

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청소년
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 월 21 일

여 수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박현숙



여수시 조례 제1739호

붙임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8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32조에 따라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위기청소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다른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쉼터”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자립지원관”이란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일정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 지원 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위기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임)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

소년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이용대상)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또는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위기청소년
2. 그 밖에 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위기청소년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여수시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둔다.

②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거지원
2. 취업지원
3. 일상생활 지원
4. 학업지원
5. 그 밖에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운영비 등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하여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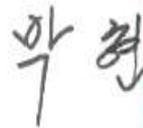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 월 21 일

여 수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인

여수시 조례 제1740호

여수시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는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마을”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10호 이상 가구로 이루어진 공간(주거지, 거리, 공동시설 등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으로 도로·하천·산 등의 경계에 따라 외형상 하나의 취락을 형성하여 환경·문화·풍습 등을 공유하는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말한다.

3.“탄소중립마을 만들기”(이하“마을만들기”라 한다)란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기후 및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마을로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

4.“추진위원회”란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주민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시와 협력해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계획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기후환경 보전을 위하여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시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기본계획과 방향
2. 종합적이고 계획적 추진체계
3. 각종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등 시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5조(행정협의체)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소관 부서와 환경, 도시계획, 문화체육 등 관계 부서 간에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이하 “행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주민의 마을만들기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등이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여수시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정성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연간 운영계획 및 공모·제안사업 승인
3. 승인사업의 변경 및 취소
4. 사업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환경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주민조직대표, 시민사회단체대표, 전문가

2. 여수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협의 등에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등)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과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통보한다.

④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마을만들기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여수시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분석·평가·연구 및 보고
3. 추진위원회의 계획수립 지원
4.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6.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절차·방법, 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수탁자의 지원센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해야 한다.

제18조(추진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수시 읍·면·동별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 행정, 소상공인, 기업, 유관기관·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하여야 하며, 인원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선출한다.

③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추진 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사업) 시장은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
2. 탄소중립 주민실천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3. 하천 수질개선 및 물순환 사업
4.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사업
5. 미세먼지 등 공기질 개선 사업
6.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순환 사업
7.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신청 및 결정)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추진위원회는 그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지원사업의 성격상 해당 읍·면·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쳐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절차·방법, 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전문가 지원 등) ① 시장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마을에 대하여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교류 및 도농교류활성화, 민간분야 파급효과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마을만들기와 연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기관·단체,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과 공동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진단·평가 등) ① 시장은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단·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과 앞으로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사업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3조(환수)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법령이나 조례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 월 4 일

여 수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박현식



여수시 조례 제1741호

붙임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1부.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50년까지 여수시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위기로부터 여수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구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인 상태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5.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기후행동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한다.
2.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3. 여수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공공기관, 기업 및 시민단체 등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4.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4조(여수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시행 주체가 되는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탄소중립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집행과정에서 시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협조를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여수시의 탄소중립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여수시가 시행하는 탄소중립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탄소중립 이행 목표) 여수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계획, 전라남도 계획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건물, 수송, 에너지, 농·축·수산, 자원순환, 숲, 생활, 교육 등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시장은 제8조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건물부문)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친환경보일러, LED 등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송부문)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 편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에너지부문) ①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보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 에너지 전환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농·축·수산부문) ① 시장은 친환경 농·축·수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농업 생산시설 구축과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수산 양식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와 전기·수소 등 친환경 농기계·어선 보급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순환부문) ① 시장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수산단 스마트 물 관리 체제 도입,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공업용수 재이용 및 빗물 중수도 재활용 시설 구축 등 물 순환 체계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숲부문) ① 시장은 가로변, 하천변, 갯벌 등에 등에 녹지, 산림 및 바다 숲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목·녹지·산림·갯벌 등의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가피하게 수목·산림·갯벌 등 탄소흡수원을 훼손할 시에는 대체 탄소흡수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생활부문) ① 시장은 생활 속 녹색생활 실천요령 제작·배포 등 시민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교육부문) ① 시장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환경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시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촉진자를 양성하여 이를 통해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③ 시장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평생교육 과정 등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18조(정의로운 전환) ① 시장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노동 시장과 산업의 변화,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제안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취약계층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탄소중립 시책 추진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 억제 실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① 시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탄소중립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또는 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 월 21 일

여 수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백현식



여수시 조례 제1742호

붙임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을 말한다.

제11조제4항 중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별표 9에 따른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생활폐기물배출자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제14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생활폐기물배출자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수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 명예수당,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 명예수당과 미망인 명예수당을 받는 사람
- 별표8 제2호의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등급	평가점수	활 용
탁월	90점 이상	포상금 지급, 표창 등
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표창 등
보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개선명령
미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개선명령 또는 영업정지
부진	60점 미만	영업정지

별표9 제1호 중 “아파트(공동주택), 그 밖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으로 하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중 “공동주택 집하장”을 “생활폐기물 집하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등 집하장”을 “생활폐기물 집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의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로 수정한다.

별표 8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의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로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 (제35조

제2항 관련)

1. 평가방법 및 배점

가. 평가방법(3단계) :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나. 배점(총점 100점)

총점	주민만족도 평가	<u>평가단</u>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비고
100	30	40	30	

다. 평가항목 및 배점

(1) 주민만족도 평가(4항목)

- 평가내용 : 올바른수거(15), 생활환경 보전(6), 시민편의(6), 종합만족도(3)
- 평가방향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평가

(2) 현장평가(5항목)

- 평가내용 : 수거구역현장평가(20), 차량관리(4), 적환장 및 주차장 관리(5), 작업자위생 안전(8), 작업자만족도(3)
- 평가방향 : 현장성과 정량성을 위해 수거 후의 주택 지역 및 상가 지역의 청결상태, 수집운반차량 등의 청결성과 내실 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

(3) 실적서류 평가(5항목)

- 평가내용 : 긴급수거등민원대응(5), 인력관리(10), 장비관리(6), 안전관리(7), 거버넌스참여(2)
- 평가방향 :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

2.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등급	평가점수	활 용
탁월	<u>90점 이상</u>	<u>포상금 지급, 표창 등</u>
우수	<u>80점 이상 90점 미만</u>	<u>표창 등</u>
보통	<u>70점 이상 80점 미만</u>	<u>개선명령</u>
미흡	<u>60점 이상</u>	<u>개선명령 또는 영업정지</u>
부진	<u>60점 미만</u>	<u>영업정지</u>

[별표 9]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및 시설 설치기준(제11조 관

련)

1. 설치기준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등에서는 규모, 배출량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집하장 규격, 형태 (100세대 이상)
 - 가. 생활폐기물 집하장은 아래와 같은 구조여야 한다.
 - 1) 기둥 및 벽체는 부식 및 파손이 잘되지 않는 단단한 재질의 금속 또는 내구성 재질
 - 2) 지붕을 설치하고 벽체의 상부공간은 환기가 가능하도록 개방하거나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바닥은 방수처리와 세척오수가 단지 내 처리시설이나 전용관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CCTV, 조명등 등 주민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해 청결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생활폐기물 집하장은 성상별, 용도별 구획되어야 한다.
 - 1)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재활용 분리수거시설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에 따라 품목별로 수

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생활폐기물 집하장은 수거장비 및 수집·운반 차량이 쉽게 진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등 집하장 규격, 형태 (100세대 미만)

가. 종량제봉투 보관 시설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 분리수거 시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에 따라 품목별로 수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가능품 배출량이 보관용기 용량을 초과할 경우 품목별로 투명 봉투에 담아 구분하여 보관한다.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공공생활폐기물”이란 도로변, 골목길, 공한지 등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7.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여수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를 말한다.
8. “종량제봉투”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용도·용량별로 제작·유통·판매하는 규격봉투를 말한다.
9. “재사용봉투”란 상품 포장 용도로 사용한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별도로 제작한 규격봉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이 조례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 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모든 시민은 법 제7조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배출 및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결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및 이행)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결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
2. 토지나 건물 안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시장이 판단하는 행위

③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의 처리 기준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전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간, 오지, 도서지역 등으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별표 3의 지역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단서에 따라 정한 별표 3의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적환장 등에 별도 보관하였다가 수시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영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구역의 범위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대행 구역 및 처리 대상 폐기물
2. 대행 기간
3. 대행 비용
4.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대행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다음달 5일까지 지급한다.

⑤ 대행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제2항에 따라 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가 대행 업무를 지연하거나 게을리 한 사실이 없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한다고 판단되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대행자는 법령 및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감독) ① 시장은 대행자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 전반에 관하여 2년 단위로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를 받을 때 시장이 요구하는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시정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하며,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해야 한다.<개정 2021. 5. 18.>

1.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폐기물 포함) :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중량제봉투”라 한다)에 묶는 선 아래까지만 담아 묶은 후 일정한 장소에 배출하되, 50리터 이상의 폐기물은 다음 각 목의 무게기준 이하로 배출
 - 가. 50리터 중량제봉투 : 10킬로그램 이하
 - 나. 75리터 중량제봉투 : 15킬로그램 이하
2. 연탄재 :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투명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서 배출
3. 대형폐기물 : 별표 1에 따라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여 일정한 장소에 배출<개정 2021. 5. 18.>
4. 재활용가능폐기물 :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 따라 분리·보관한 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일정한 장소에 배출<개정 2021. 5. 18.>
5. 음식물류폐기물 : 「여수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
 -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차량진입이 어려운 고지대 단독주택, 빌라, 연립주택, 원룸 등에는 따로 배출 장소를 지정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배출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일,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④ 생활폐기물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다음 각 호의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이 제1항의 배출방법에 따라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올바르게 분리·보관될 수 있도록 별표 9에 따른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여야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생활폐기물배출자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의 생활폐기물배출자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제14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생활폐기물배출자

4. 그 밖에 다량의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건축물의 생활폐기물배출자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활용가능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분리·보관하고 있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집·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인원과 차량을 확보하거나 제9조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집·운반 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시장,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및 민간수거업체는 환경부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분리수거의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가능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종량제봉투의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이상 우수 통·반 또는 구역을 선정하여 세대별로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지역 선정기준은 종량제봉투의 사용비율, 불법투기 적발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1년에 한 세대 당 200리터를 초과하여 지원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집·

운반을 지연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규칙 제14조 별표 5의 제1호가목1)의 단서에 따라 그 폐기물을 법 제2조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 법 제13조의2 및 규칙 별표 5의3에 따라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에서 처분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로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입 5일전에 배출자, 배출장소, 운반업체, 배출예정량 등에 대한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분리·배출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 법 제13조의2 및 규칙 별표 5의3에 따라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3장 생활폐기물의 종량제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17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

작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 전면에 봉투의 용량·재질·용도, 주의사항, 시명(市名), 시의 문장(紋章)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한다.

③ 시장은 민간 제작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 및 하도급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 제작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나 탄산칼슘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표시내용 등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 단체표준규격(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재사용·공공용으로 구분하고, 일반용·재사용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에는 도로변, 골목길 및 공한지 폐기물 등을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2021. 5. 18.>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고밀도합성수지, 생분해성, 탄산칼슘 함유 봉투 중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와 주민의 사용 편리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재질별 규격은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해야 하고,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용은 연두색, 재사용은 하늘색, 공공용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개정 2021. 5. 18.>

③ 종량제봉투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환경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규격으로 한다.

제19조(종량제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제작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이하 “종량제봉투등”이라 한다)를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판매소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업무를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종량제봉투등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에 따른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시장은 가로변 및 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및 리·통 단위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판매소 지정)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인 경우

2. 그 밖에 판매소 지정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매인 확인서를 받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판매소 변경지정) ① 제20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 위치, 상호 또는 판매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

- 류 1부.
- 2. 종량제봉투판매지정서 1부
- 3. 분실사유서 1부(제20조제4항 따른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 변경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정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매인확인서를 받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계 받은 자가 승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승계승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2. 종량제봉투 등 판매지정서 1부
 - 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5. 분실사유서 1부(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판매소 승계승인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정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매인확인서를 받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판매자가 휴·폐업 등의 사유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위조 또는 유사 종량제봉투 등을 유통·판매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
 - 3. 그 밖에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 ⑥ 제5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한 날부터

1년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종량제봉투등의 공급 업무 대행) ① 시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량제봉투등의 공급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9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종량제봉투등의 적정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면·동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개정 2021. 5. 18.>
2. 여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등의 공급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 업무의 구체적 범위
2. 종량제봉투등의 보관·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종량제봉투등의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 이체기간에 대한 사항
4. 대행 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대행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

③ 종량제봉투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생활폐기물의 배출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 : 수수료 미부과.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 「여수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 별표 1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 수수료 :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② 제1항제2호의 수수료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하는 전자지불제도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가격 산정은 별표 5를 기준으로 하고,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6과 같다.

제2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판매소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판매소로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와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말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폐기물 분리 보관용기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이 필요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2. 「여수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

훈명예수당,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 명예수당과 미망인 명예수당을 받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개정 2021. 5. 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8.>

제26조(종량제봉투등의 환불)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구입한 후에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봉투등의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판매소를 통하여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판매소는 반드시 환불해 주어야 한다.

제4장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 등

제27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 따라 폐기물의 무단투기 등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해당 신고에 의하여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2.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인당 월 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신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고한 것도 신고자가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신고 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 건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③ 신고포상금 지급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결정된 후 지급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신고방법 및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① 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신망,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일시·위반장소·위반행위자·위반내용 등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증거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접수된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제29조(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① 시장은 제27조에 따른 신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3. 신고사항이 같은 날(00:00~24:00)·같은 장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미 공무원 등이 적발하였거나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4.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 발견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5. 신고자가 신고일 현재 여수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6.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불법투기 감시원 위촉 등) ① 시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불법투기 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원의 위촉기간은 해당연도의 채용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감시원에게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감시원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③ 감시원은 감시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감시원증을 휴대하여야 하고, 이를 남용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④ 감시원은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활동 등을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감시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불법투기 감시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청결활동 종합평가 실시 및 보상) ① 시장은 청결활동 추진 및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등 읍·면·동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된 읍·면·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평가기간·평가기준 등 우수부서 선정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 시장은 폐기물 무단투기 등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5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

제3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① 평가대상은 제9조에 따라 시장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자가 된다.

② 평가의 범위는 대행자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로환경 개선 및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

제35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대행자에게 평가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표 8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1.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 가. 현장평가(평가대상자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를 제고하고자 실시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 성실이행도 평가)
 - 나. 서류평가(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위반, 민원의 처리, 서류작성의 성실성, 운영관리 적합성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등이 각종 서류를 통하여 평가)
 - 다. 시민만족도 평가(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의 만족도를 시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각종 평가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자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제35조에 따른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37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평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 결과를 대행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자는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8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 조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에 민간전문가(평가용역기관 등), 시민대표, 공무원 및 각종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현장평가단 구성원이 대행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단에서 제외되며, 대행자는 현장평가단의 구성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시장은 대행실적 평가결과를 폐기물관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청소장비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시장은 대행실적 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8항제3호 및 규칙 제15조

의5에 따라 대행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실적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행자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확인·점검하거나 관련 서류를 통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대행자에게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 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제41조 및 제42조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대행자와의 대행 계약 체결 시 명시할 수 있다.

제6장 업무의 위임·위탁

제44조(권한위임) ① 제20조 및 제21조의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소 지정·변경지정에 관한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에서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업무위탁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예상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품목 및 수수료기준 (제2조, 제11조, 제23조 관련)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냉 장 고	500 l 이상	8,000
	300 l 이상	6,000
	300 l 미만	4,000
텔 레 비 전	42인치 이상	5,000
	42인치 미만	3,000
세 탁 기	모든 규격	4,000
에 어 컨	264㎡ 이상	8,000
	66㎡ 이상	5,000
	66㎡ 미만	3,000
가스(전기)오븐렌지	높이1m 이상	4,000
	높이1m 미만	2,000
전자레인지	높이1m 이상	4,000
	높이1m 미만	2,000
탈 수 기	모든 규격	2,000
공기청정기	모든 규격	2,000
장 농 (1쪽 당)	폭 120cm 초과	15,000
	폭 90cm 초과~120cm 이하	10,000
	폭 90cm 이하	8,000
소 파	대형 6인용	8,000
	대형 4인용	6,000
	3인용	5,000
	2인용	4,000
	1인용(개당)	2,000
책 상	양수, 대형	5,000
	편수, 소형	4,000
	컴퓨터책상	2,000
식 탁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식 탁 (대 리 석)	6인용 이상	10,000
	6인용 미만	8,000
피 아 노	그 랜 드	15,000
	업 라 이 트	10,000
	디지털	5,000
서 랫 장	5단 이상	4,000
	4단 이하	2,000
신 발 장	높이1m 이상	3,000
	높이1m 미만	2,000
문 갑	모든 규격	2,000
화 장 대	모든 규격	3,000
장 식 대	90cm×180cm 이상	7,000
	90cm×180cm 미만	5,000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침 대	2인용 이상 1인용	15,000 10,000
돌 침 대	2인용(받침 별도) 이상 1인용(받침 별도)	20,000 15,000
돌침대받침	2인용(돌침대 별도) 이상 1인용(돌침대 별도)	20,000 10,000
매 트 리 스	2인용 이상 1인용	8,000 5,000
유아용침대	개 당	3,000
어린이 2층침대	개 당	20,000
케 비 닷	대형(일반형) 소형(이중케비닛)	6,000 4,000
오 디 오	대 형 중 형 소 형	15,000 10,000 5,000
스 피 커	대형(높이 혹은 너비 1m 이상) 소형(높이 혹은 너비 1m 미만)	5,000 2,000
컴 퓨 터	본체, 모니터, 프린터	각 2,000
프 린 터 기 (팩시밀리)	모든 규격	3,000
난 로	대형 소형	4,000 2,000
선 풍 기	대 형 소 형	3,000 2,000
밥 상	6인 이상 6인 미만	3,000 2,000
썩 크 대	가로 120cm 이상 가로 120cm 미만	5,000 3,000
찬 장	가로 120cm 이상 가로 120cm 미만	5,000 3,000
의 자	안마의자 대형(사무용 회전의자) 중형(식탁의자) 소형(등받이가 없는 의자)	15,000 3,000 2,000 1,000
옷 걸 이	모든 규격	2,000
쌀 통	모든 규격	3,000
유 모 차	모든 규격	2,000
세 면 대	모든 규격	4,000
변 기 통	모든 규격	3,000
벽 시 계	대 형 소 형	2,000 1,000
재 봉 틀	모든 규격	2,000
정 화 조	10인용 이상 10인용 미만	15,000 10,000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온 풍 기	264㎡ 이상	8,000
	66㎡ 이상	5,000
	66㎡ 미만	3,000
오 락 기	29인치 이상	7,000
	25인치 이상	5,000
	25인치 미만	3,000
정 수 기	모든 규격	3,000
복 사 기	모든 규격	6,000
보 행 기	모든 규격	1,000
물 탱 크	1톤 이상	15,000
	1톤 미만	10,000
문 짝	현관문 및 베란다문	5,000
	방문(목재)	4,000
	창 문	3,000
개 집	모든 규격	3,000
간 판	대형(3㎡ 이상)	8,000
	소형(3㎡ 미만)	4,000
거 울 , 액 자	모든 규격	2,000
기 름 보 일 러	대 형	8,000
	중 형	5,000
	소 형	3,000
수 족 관	가로1m 이상	4,000
	가로1m 미만	2,000
책 장	1m 이상	8,000
	1m 미만	5,000
책 꽃 이	4단 이하	4,000
	2단 이하	2,000
판 유 리	60kg 이상	3,000
	60kg 미만	2,000
의 류 · 이 불	묶음단위 100ℓ 봉투기준	2,000
나 뭇 가 지	묶음단위 길이 1m×지름30cm	2,000
카 페 트	1묶음(20kg)	2,000
마 네 킹	개 당	3,000
육 조	개 당	4,000
아이스박스	대 형	2,000
	소 형	1,000
자 전 거	성 인 용	3,000
	어 린이 용	2,000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가 방	골프가방	3,000
	가로 50cm 이상	3,000
	가로 50cm 미만	2,000
욕 실 수 건 합	개 당	2,000
런 닝 머 신 클 싸 이 클	개 당	10,000
칸 막 이 판 넬 (파 티 션)	개 당	2,000
자 판 기	대형(1m 이상)	20,000
	소형(1m 미만)	10,000
금 고	대 형	15,000
	소 형	10,000
세 단 기	모든 규격	5,000
식 기 건 조 기	모든 규격	2,000
식 기 세 척 기	모든 규격	3,000
청 소 기	개 당	2,000
가 습 기	개 당	2,000
전 기 밥 슥 (통)	개 당	2,000
고 무 통	모든 규격	1,000
다 리 미 판	모든 규격	1,000
비 데	모든 규격	1,000
그네, 목마, 유아용자동차	모든 규격	2,000
유 아 용 카 시 트	모든 규격	2,000
항아리 및 화분	50cm 초과	3,000
	50cm 이하	2,000
돛자리, 대자리	1개당	3,000
화 환	모든 규격	2,000
병 풍	모든 규격	3,000
쓰 레 기 통	50 l 초과	3,000
	50 l 이하	2,000
블 라 인 드	1m 초과	4,000
	1m 이하	2,000
탁 자	폭 1m이상	4,000
	폭 1m미만	2,000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전 기 장 판	일반(1인용)	2,000
	일반(2인용)	3,000
	옥(황토)(1인용)	3,000
	옥(황토)(2인용)	5,000
조 명 기 구	모든 규격	2,000
평 상	2m×2m 초과	10,000
	2m×2m 이하	7,000
인형장난감류	100 ℓ 당	2,000
텐 트	1개당	2,000
천 막	1개당	5,000
드럼통 및 페인트통 (건조페인트 6mm 미만)	10 ℓ 초과	3,000
	10 ℓ 이하	2,000
팬 히 터	대형(1m 이상)	2,000
	소형(1m 미만)	1,000
당 구 대	나무틀	20,000
탁 구 대	모든규격	7,000
미 끄 럽 틀	유아용	5,000
소 화 기	20kg 이하	5,000
	6.5kg 이하	3,000
	2.5kg 이하	1,000
기 타	20kg 용량당	2,000

※ 상기 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하며, 폐 가전제품의 배출수수료는 원형이 훼손되어 무상수거가 곤란한 제품을 말한다.

[별표 2] <삭제 2021. 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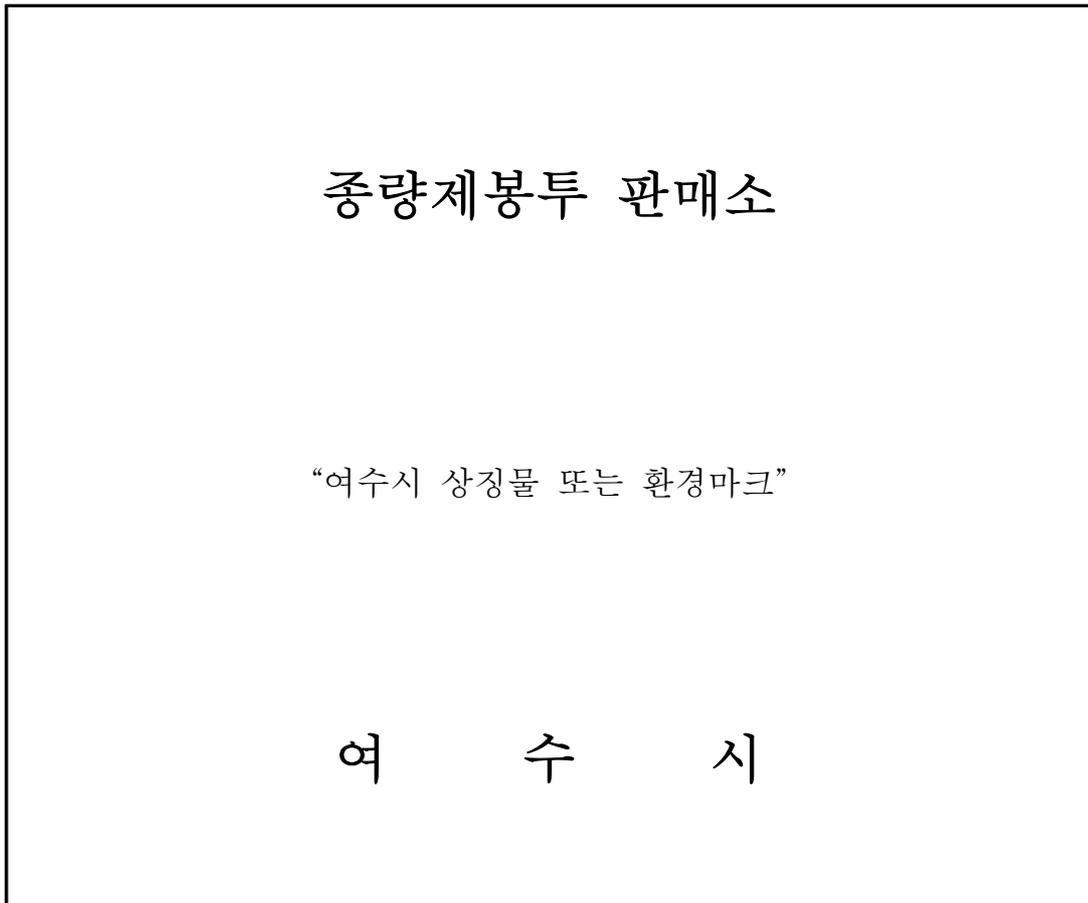
[별표 3] <개정 2021. 5. 18.>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 (제8조제1항 관련)

읍 면 동	법정동리	행정동리명 및 자연부락명	면 적(km ²)	비 고
계	12	15(1)	10	
돌 산 읍	군 내 리	송 도	0.8	
율 촌 면	여 동 리	송 도	1.0	
화 양 면	이 천 리	운두도(1)	0.1	
남 면	두 라 리	대 두	0.3	
		봉 통	0.7	
		나 발	0.3	
	횡 간 리	횡 간	0.4	
화 정 면	월 호	월 호	1.9	
		자 봉	0.3	
	제 도 리	제 도	1.0	
	하 화 리	하 화	0.7	
	상 화 리	상 화	0.7	
	낭 도 리	사 도	0.4	
	조 발 리	조 발	0.7	
	여 자 리	여 자	0.7	

[별표 4]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 표지판(제19조제3항 관련)



- 주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점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떨어져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할 수 있다.
4.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0cm로 하고 두께는 1.4mm로 한다.

[별표 5]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제23조제3항 관련)

$(L \text{ 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L) + \text{봉투제작비}) \times \text{주민부담률(목표치)} + \text{판매수수료}$ <p style="text-align: right;">*10원 단위 절상</p>
--

- (주) 1. L 당 처리비용 = 연간 총 처리비용 ÷ 연간 사용된 봉투 총용량
- 연간 총 처리비용 : 혼합 일반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연간 사용된 봉투 총용량 :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용량(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용량은 제외)
2. 주민부담률(%)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100
3.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산정하고, 봉투 판매수수료, 봉투 제작비는 판매수입에서 제외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판매 환산금액은 제외
4.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재활용품 분리 선별 후 발생된 폐기물 운반·처리 비용은 제외
5. 봉투제작비 =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
6. 판매수수료 = (L 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L) + 봉투제작비) × 주민부담률 × 판매수수료 효율 ÷ (1 - 판매수수료 효율)
-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효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 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별표 6] <개정 2021. 5. 18.>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제23조제3항 관련)

종류	5 ℓ	10 ℓ	20 ℓ	30 ℓ	50 ℓ	75 ℓ
판매가격(원)	140	250	500	720	1,200	1,800
배출중량					10kg 이하	15kg 이하

※ 폐기물 배출 밀도 0.2kg/ℓ 이하

[별표 7]

위반행위의 종별과 포상금 지급기준(제27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포상 금액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행위	5	1.5
나.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행위	20	6
다. 휴식,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행위	20	6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행위	50	15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행위	100	3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3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21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3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15

※ 포상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로 한다.

[별표 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 (제35조제2항 관련)

1. 평가방법 및 배점

가. 평가방법(3단계) :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나. 배점(총점 100점)

총점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비고
100	30	40	30	

다. 평가항목 및 배점

(1) 주민만족도 평가(4항목)

－ 평가내용 : 올바른수거(15), 생활환경 보전(6), 시민편의(6), 종합만족도(3)

－ 평가방향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평가

(2) 현장평가(5항목)

－ 평가내용 : 수거구역현장평가(20), 차량관리(4), 적환장 및 주차장 관리(5),

작업자위생 안전(8), 작업자만족도(3)

－ 평가방향 : 현장성과 정량성을 위해 수거 후의 주택 지역 및 상가 지역의 청결상태, 수집운반차량 등의 청결성과 내실 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

(3) 실적서류 평가(5항목)

－ 평가내용 : 긴급수거등민원대응(5), 인력관리(10), 장비관리(6), 안전관리(7), 거버넌스참여(2)

－ 평가방향 :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

2.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등급	평가점수	활 용
탁월	90점 이상	포상금 지급, 표창 등
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표창 등
보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개선명령
미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개선명령 또는 영업정지
부진	60점 미만	영업정지

[별표 9]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및 시설 설치기준(제11조 관련)

1. 설치기준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등에서는 규모, 배출량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집하장 규격, 형태 (100세대 이상)
 - 가. 생활폐기물 집하장은 아래와 같은 구조여야 한다.
 - 1) 기둥 및 벽체는 부식 및 파손이 잘되지 않는 단단한 재질의 금속 또는 내구성 재질
 - 2) 지붕을 설치하고 벽체의 상부공간은 환기가 가능하도록 개방하거나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바닥은 방수처리와 세척오수가 단지 내 처리시설이나 전용관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CCTV, 조명등 등 주민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해 청결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생활폐기물 집하장은 성상별, 용도별로 구획되어야 한다.
 - 1)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재활용 분리수거시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에 따라 품목별로 수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 집하장 규격, 형태 (100세대 미만)
 - 가. 종량제봉투 보관 시설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재활용 분리수거 시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에 따라 품목별로 수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가능품 배출량이 보관용기 용량을 초과할 경우 품목별로 투명 봉투에 담아 구분하여 보관한다.

[별지 제2호 서식]

판 매 인 확 인 서

판 매 소 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상기 본인은 여수시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인의 영업
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특히 종량제봉투 등의 위조품 발견 시 즉
시 신고는 물론 위조품 유통물을 판매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 (인)

○ ○ 읍 · 면 · 동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종량제봉투 등 판매지정서

판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판매소	상호		업종	
	소재지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시 주의사항

1. 불량 종량제봉투는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2. 종량제봉투는 반드시 진열장에 깨끗이 정돈하여 판매하고 생활 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3. 유사 봉투를 유통시키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처벌 또는 판매소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폐업, <input type="checkbox"/> 휴업)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상 호		지정 연월일	
	판매소위치			
<input type="checkbox"/> 휴업 <input type="checkbox"/> 폐업	일 자		재 개 업 예 정 일 자	
<input type="checkbox"/> 휴업 <input type="checkbox"/> 폐업	사 유			
<p>「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p>○ ○ 읍·면·동장 귀하</p>				
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7호 서식]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신고 일자	신고 방법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내용			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	비 고
			성명	연락처		현지 확인일자	조사결과	회신일자		

주) 신고방법은 일반전화, 인터넷, 모사전송,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뒷 면〉

(작성요령)

1. ① 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⑧ 장소 표시는 행정주소로 표시하거나 장소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이정표(예:00육교, 00빌딩 등)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3. ⑭ 차량, 건설기계 또는 원동기 등 번호판이 있는 이동수단의 경우 번호판 또는 등록번호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4. ⑯ 신고내용의 해당란에 체크 (☑) 하시기 바랍니다.
5. ⑰ 세부 신고내용에는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증거물은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증자료는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내용(폐기물의 양, 내용물 등)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9호 서식]

<p>No.</p> <p style="text-align: center;">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원증</p> <p>성 명 :</p> <p>생 년 월 일 :</p> <p>주 소 :</p> <p>위촉기간 : 20 ~ 20</p> <p>위 사람은 여수시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원임을 증명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여 수 시 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진</p> <p style="text-align: center;">(3×3.5cm)</p>
--	--

규 격	비 고
<p>기본규격 : 720mm×520mm</p> <p>※ 변형가능</p>	<p>○ 바탕 : 주황색</p> <p>○ 글씨 : 검정색</p> <p>※ 변형가능</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u>재활용가능폐기물</u>”이란 <u>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u></p> <p>5. ~ 9. (생략)</p> <p>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③ (생략)</p> <p>④ <u>생활폐기물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다음 각 호의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이 제1항의 배출방법에 따라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올바르게 분리·보관될 수 있도록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1. (생략)</p> <p><u><신 설></u></p> <p>2.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재활용가능폐기물</u>”이란 「<u>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 자원을 말한다.</p> <p>5. ~ 9. (현행과 같음)</p> <p>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u>별표 9에 따른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u></p> <p>1. 「<u>건축법 시행령</u>」 제3조의5 <u>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생활폐기물배출자</u></p> <p>2. (현행 제1호와 같음)</p> <p>3. 「<u>건축법 시행령</u>」 제3조의5 <u>별표 1의 제14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생활폐기물배출자</u></p> <p>4. (현행 제2호와 같음)</p>

제25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중에서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보훈 명예수당을 받는 사람

3. (생략)
- ② (생략)

제25조(수수료의 감면) ① -----

-----.

1. (현행과 같음)
2. 「여수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 명예수당,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 명예수당과 미망인 명예수당을 받는 사람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별표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
(제35조제2항 관련)

1. 평가방법 및 배점
 - 가. 평가방법(3단계) :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나. 배점(총점 100점)

총점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비고
100	30	40	30	

- 다. 평가항목 및 배점
 - (1) 주민만족도 평가(4항목)
 - 평가내용 : 바른수거(15), 생활환경 보전(6), 대시민자세(6), 종합만족도(3)
 - 평가방향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평가

[별표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
(제35조제2항 관련)

1. 평가방법 및 배점
 - 가. 평가방법(3단계) :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나. 배점(총점 100점)

총점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비고
100	30	40	30	

- 다. 평가항목 및 배점
 - (1) 주민만족도 평가(4항목)
 - 평가내용 : 올바른수거(15), 생활환경 보전(6), 시민편의(6), 종합만족도(3)
 - 평가방향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평가
 - (2) 현장평가(5항목)
 - 평가내용 : 수거구역현장평가(20), 차량관리(4),

(2) 현장평가(5항목)

- 평가내용 : 바른수거(30), 중합만족도(1), 인력관리(1), 장비관리(2), 시설관리(6)

- 평가방향 : 현장성과 정량성을 위해 수거 후의 주택 지역 및 상가지역의 청결상태, 수집운반차량 등의 청결성과 내실 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

(3) 실적서류 평가(5항목)

- 평가내용 : 민원처리(4), 인력관리(9), 장비관리(5), 안전관리(5), 시책사업의참여정도(7)

- 평가방향 :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시책사업의 참여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

2.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등급	평가점수	활 용
탁월	92점 이상	우수직원 해외연수 확대, 표창 등
우수	85점 이상	우수직원 국내연수 확대, 표창 등
보통	70점 이상 85점 미만	해외 및 국내연수, 표창 등 제외
미흡	70점 미만	경고 조치 (대행계약 해지 등)

[신설]

적화장 및 주차장관리(5), 직업자위생 안전(8), 작업자만족도(3)

- 평가방향 : 현장성과 정량성을 위해 수거 후의 주택 지역 및 상가지역의 청결상태, 수집운반차량 등의 청결성과 내실 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

(3) 실적서류 평가(5항목)

- 평가내용 : 긴급수거등민원대응(5), 인력관리(10), 장비관리(6), 안전관리(7), 거버넌스참여(2)

- 평가방향 :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

2.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등급	평가점수	활 용
탁월	90점 이상	포상금 지급, 표창 등
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표창 등
보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개선명령
미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개선명령 또는 영업정지
부진	60점 미만	영업정지

[별표9]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및 시설 설치기준(제11조 관련)

1. 설치기준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등에서는 규모, 배출량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집하장 규격, 형태 (100세대 이상)
 - 가. 생활폐기물 집하장은 아래와 같은 구조여야 한다.
 - 1) 기둥 및 벽체는 부식 및 파손이 잘되지 않는 단단한 재질의 금속 또는 내구성 재질

	<p>2) 지붕을 설치하고 벽체의 상부공간은 환기가 가능하도록 개방하거나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p> <p>3) 바닥은 방수처리와 세척오수가 단지 내 처리시설이나 전용관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4) CCTV, 조명등 등 주민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해 청결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p> <p>나. 생활폐기물 집하장은 성상별, 용도별로 구획되어야 한다.</p>
<p>[별지 제1호 서식]</p>	<p>1)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2) 재활용 분리수거시설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에 따라 품목별로 수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p> <p>다. 생활폐기물 집하장은 수거장비 및 수집·운반 차량이 쉽게 진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p> <p>3. 생활폐기물 집하장 규격, 형태 (100세대 미만)</p> <p>가. 종량제봉투 보관 시설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나. 재활용 분리수거 시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에 따라 품목별로 수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가능품 배출량이 보관용기 용량을 초과할 경우 품목별로 투명 봉투에 담아 구분하여 보관한다.</p> <p>[별지 제1호 서식]</p>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변경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일
성명		생년월일	
상호		위치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p>위와 같이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주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읍·면·동장 귀하</p>			
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3. 분실 사유서(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별지 제5호 서식]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승계승인 신청서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승계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3일
현판매인	성명		생년월일
	상호		지정연월일
판매소위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승계 사유			
<p>「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주소 : 판매인 : (서명 또는 인)</p> <p>○○ 읍·면·동장 귀하</p>			
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수수료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변경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일
성명		생년월일	
상호		위치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p>위와 같이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주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읍·면·동장 귀하</p>			
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3. 분실 사유서(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별지 제5호 서식]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승계승인 신청서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승계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3일
현판매인	성명		생년월일
	상호		지정연월일
판매소위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승계 사유			
<p>「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주소 : 판매인 : (서명 또는 인)</p> <p>○○ 읍·면·동장 귀하</p>			
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분실사유서(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해당)	없음
---	----

[별지 제6호 서식]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폐업, <input type="checkbox"/> 휴업)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상호	지정연월일	
판매소위치			
<input type="checkbox"/> 휴업 <input type="checkbox"/> 폐업	일자	재개업 예정일자	
<input type="checkbox"/> 휴업 <input type="checkbox"/> 폐업	사유		
<p>「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읍·면·동장 귀하</p>			
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			수수료 없음

[별지 제8호 서식]

2. 판매소 지정서 1부 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분실사유서(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해당)	없음
--	----

[별지 제6호 서식]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폐업, <input type="checkbox"/> 휴업)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상호	지정연월일	
판매소위치			
<input type="checkbox"/> 휴업 <input type="checkbox"/> 폐업	일자	재개업 예정일자	
<input type="checkbox"/> 휴업 <input type="checkbox"/> 폐업	사유		
<p>「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읍·면·동장 귀하</p>			
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			수수료 없음

[별지 제8호 서식]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위반행위 신고서			
①신고인	②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주 소		
	⑤연 락 처		
⑥위반자	⑦적발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경	
	⑧적발장소		
	⑨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 소		
	⑫상 호	⑬연 락 처	
	⑭차량번호	⑮기타 특이사항	
⑯신 고 내 용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담배꽂초 · 휴지 등)		<input type="checkbox"/> 해당여부	
간이보관기구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비닐봉지 · 천 등)		<input type="checkbox"/> 해당여부	
휴식 · 행락 중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은 행위		<input type="checkbox"/> 해당여부	
생활폐기물 · 사업장생활폐기물 불법 소각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해당여부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차량· 수레 등)		<input type="checkbox"/> 해당여부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해당여부	
⑰세 부 신 고 내 용			
<p>「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인)</p>			
증 거 물	<input type="checkbox"/> 우편물, <input type="checkbox"/> 고지서, <input type="checkbox"/> 매출채권,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자료	<input type="checkbox"/> 위반사진, <input type="checkbox"/> 위반영상, <input type="checkbox"/> 기타자료 ()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위반행위 신고서			
①신고인	②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주 소		
	⑤연 락 처		
⑥위반자	⑦적발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경	
	⑧적발장소		
	⑨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 소		
	⑫상 호	⑬연 락 처	
	⑭차량번호	⑮기타 특이사항	
⑯신 고 내 용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담배꽂초 · 휴지 등)		<input type="checkbox"/> 해당여부	
간이보관기구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비닐봉지 · 천 등)		<input type="checkbox"/> 해당여부	
휴식 · 행락 중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은 행위		<input type="checkbox"/> 해당여부	
생활폐기물 · 사업장생활폐기물 불법 소각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해당여부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차량· 수레 등)		<input type="checkbox"/> 해당여부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해당여부	
⑰세 부 신 고 내 용			
<p>「여수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인)</p>			
증 거 물	<input type="checkbox"/> 우편물, <input type="checkbox"/> 고지서, <input type="checkbox"/> 매출채권,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증자료	<input type="checkbox"/> 위반사진, <input type="checkbox"/> 위반영상, <input type="checkbox"/> 기타자료 ()		

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 월 21 일

여 수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박현숙



여수시 조례 제1743호

붙임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의 요청을 하고자”를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로, “서식에 따라 설계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를 “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요청을 받은”을 “요청이 있는”으로, “요청인”을 “신청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재심의 의결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6조제1항제7의2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

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이나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관이나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그 적용의 산정 및 신청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의 제목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를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은”을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로, “법에”를 “법, 영이나 이 조례에”로, “대지나 건축물이”를 “경우라도 시장은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로, “경우 건축을 허가할”을 “경우에는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위원회)”를 “(구성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5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해촉·임기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및 조사·심의·조정·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등을 하며,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2.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3.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이상을 말한다.)
4. 높이가 13미터 이상이거나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6개 층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5.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 한옥건축물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소위원회)”를 “(전문위원회 구성)”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위원회는 위원회”를 “전

문위원회(제1항제1호의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회의”로, “7명”을 “1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로,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전문위원회
3. 건축구조전문위원회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계획전문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구조전문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전문위원회)”를 “(전문위원회 회의 운영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전문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제5조, 제6조”를 “제6조”로 한다.

①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이나”를 “위원회 위원 중 건축이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종사중인”을 “종사하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종사중”을 “종사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 및 영 제5조의9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6조 및 제9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로 본다.

제14조 본문 중 “위원 및”을 “위원(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및”으로 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구성한다.

② 건축허가 관련 부서의 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설계건축사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합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건축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제20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로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11.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라 지원받는 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로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1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신고수리 통지를 받은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15조제5항 각 호(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제2항 각 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제21조의 제목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제1호 중 “다중이용건축물”을 “다중이용건축물(「건설기술 진흥법」 제 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한 경우로만 한정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임시)승인대상 건축물(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용도 변경 허가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대행자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제3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의 ‘건축공사 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 ⑤ 건축주와 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⑦ 설계변경 등으로 감리비용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변경된 감리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비용은 별도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다만,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 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최초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실

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분야 기술자격 소지자**”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사 또는 건축 관련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6. 5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7.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8. 3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9.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0.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제26조의 제목 “**(대지안의 조경)**”을 “**(대지의 조경)**”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나무 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제2항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

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10.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다만, 경사도가 10분의 3 이상인 경사지붕이거나 옥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녹화할 경우에 한정한다)
- ③ 시장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나무 심기에 부적합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나무심기 대신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퍼걸러(pergola),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설치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27조의2제1항**”을 “**영 제27조의2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연면적**”을 각각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장례식장, 위락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을 말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제26조의 기준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1개소 이상의 긴 의자와 공공편의시설 및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32조의 제목 “(대지안의 공지)”를 “(대지 안의 공지)”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맞벽건축)”을 “(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동 이하로 할 것”을 “3동 이내(도로변 양측 2면 이내로서 후면은 제외함)”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맞벽 되는 부분의 층수가”를 “맞벽이 되는 부분이 층수를”로, “것”을 “것(다만, 상업지역의 맞벽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으로 한다.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용도일 것

가.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나.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로 하고,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다)이 해제된 구역

2. 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장이 인정하는 구역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 따라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 계획에 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완화

5. 협정지역 내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 임차인,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 따라 건축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재료 및 색채

2.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⑤ 영 제110조의6제5호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가 요구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실현 계획 및 구체적인 방법과 사업비용 산출근거, 내역서 등 사업계획 관련도서를 말한다.

제36조(결합건축대상지) 법 제77조의15제3항에 따라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

은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37조(중전의 제35조) 제1항제2호 중 “사일로·건조시설”을 “저장탑·건조시설”로, “것”을 “것(다만,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로서 원예 등을 위한 연료저장탱크, 곡물저장탑, 축사·양어장 사료보관 저장탑, 액비저장탱크 등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8조(중전의 제36조)제1항 중 “부분 단서”를 “단서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제1호 중 “법 제 20조제3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을 “따른”으로,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다음과”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부과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③ 영 제115조의2제1항 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영 별표 15 제1호 및 제13호, 제14호를 말한다.

⑤ 법 제80조제2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4.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6.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7. 「건축물관리법」 제4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기능

제41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전액
3.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4.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관련 실태조사·검사 및 안전점검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④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경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사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별표 3]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0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0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u>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u>),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16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u>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u>	•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u>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u>)	• 아파트 : 4.5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0미터 이상
바. 그 밖에 건축물(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을 포함한다.) • 연면적의 합계가 <u>5천제곱미터</u> 이상인 건축물(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및 창고는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비고 :

1.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설계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여수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여수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p>	<p>제3조(적용의 완화) ① ----- -----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 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 -.</p> <p>② ----- ----- 요청이 있는 ----- ----- ----- 신청인----- . 다만, 재심의 의결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p>

제7호의2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 4. (생략)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140을 말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이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을 말한다.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이나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이나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법령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대지나 건축물이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의2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이란 제31조에서 정하는 면

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그 적용의 산정 및 신청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 법, 영이나 이 조례에 ----- 경우라도 시장은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 경우에는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

<삭 제>

적을 말한다.

③·④ (생략)

<신설>

제5조(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영 제5조의5에 따른다.

<신설>

②·③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5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해촉·임기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7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5조의 5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 이라 한다)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 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으로

제6조의2(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및 조사·심의·조정·재정(이하 “심의 등”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등을 하며,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2.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3.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이상을 말한다.)
4. 높이가 13미터 이상이거나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서 주택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나.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3.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 한옥건축물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6개 층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5.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 한옥건축물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전문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전문위원회
3. 건축구조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제1항제1호의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회의 --- 10명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 호선(互選)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소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5조,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신 설>

제9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시장이 구성·운영하는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계획 전문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구조 전문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전문위원회 회의 운영 등)

①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

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5조,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1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 . -----

----- .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

----- 제6조 -----
----- .
----- .

제1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제4조의4제1항 각 호 및 영 제5조의9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위원회 위원 중 건축이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 3. (생략)
-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사람

-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사람

- 6. (생략)
- ④ (생략)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할 민원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

-----.

- 1. ~ 3. (현행과 같음)
- 4. -----
----- 종사
하고 있는 -----

- 5. -----
----- 종사 중-----

- 6.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 ⑤ -----
3년-----.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삭 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략)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6조 및 제9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로 본다.

②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4조(수당) -----
위원(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및 -----
-----.

-----.

제16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구성한다.

② 건축허가 관련 부서의 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③ 협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간사는 건축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영 제15조제1항과 같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설계건축사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합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건축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닐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축물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공장부지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모제한을 두지 않는다.

1. ~ 9. (생략)

10.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최소한의 건축물

<신설>

<신설>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

-----.

1. ~ 9. (현행과 같음)

10.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로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11.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라 지원받는 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로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1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신고수리 통지를 받은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③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

2. 제2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서, 시장이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제2조제17호 각 목의 다중이용건축물

2. (생략)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영 제15조제5항 각 호(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제2항 각 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다중이용건축물(「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한 경우로만 한정한다.)

2. (현행과 같음)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가설건축물 포함)·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무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의 현장조사업무 대행자는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

시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임시)승인대상 건축물(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대행자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삭제>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2부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시장에게 1부를 제출한다.

2. 제2항제2호의 현장조사업무 대행자는 시장이 직접 선정하고, 선정된 현장조사업무 대상자는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2부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사용승인신청 시 시장에게 1부를 제출한다.

3. 제2항제2호의 현장조사업무 대행 시 건축물 및 현장조건이 관계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적법하게 시정조치를 한 후 업무대행을 시행한다.

4. 제3호에 따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적법한 시정조치 등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 19조의3제3항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의 ‘건축공사 감리 대가요율’ 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 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 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⑦ 설계변경 등으로 감리비용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변경된 감리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비용은 별도로 한다.

제24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

제24조(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 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영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시장은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된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지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 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다만,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최초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5조(건축지도원) ① -----

----- 각 호의 사람
-----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1. (생략)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분야 기술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2. 건축사 또는 건축 관련 기술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6. 5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7.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8. 3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9.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0.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

② (생 략)

제26조(대지안의 조경) ① 건축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조경 등의 조치” 라고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분야 종사자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나무 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6.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신 설>

<신 설>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영 제27조제1항제10호가
목·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생 략)

<신 설>

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
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
치하는 관광시설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10.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다
만, 경사도가 10분의 3 이상
인 경사지붕이거나 옥상면적
의 30퍼센트 이상을 녹화할
경우에 한정한다)

③ 시장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나무 심기에 부적
합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나무심기 대신 제1
항에 각 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퍼걸러(pergola), 조각물, 조
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식재 등 조경기준) 대
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
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설치

축물 : 대지 면적의 8퍼센트

3. 연면적의 합계가 2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제26조의 기준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1개소 이상의 긴 의자 및 공공편의시설,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32조(대지안의 공지) (생략)

제33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은 그 기준에 의한

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제26조의 기준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1개소 이상의 긴 의자와 공공편의시설 및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32조(대지 안의 공지) (현행과 같음)

제33조(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

다.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맞벽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맞벽 건축물의 층수 : 맞벽 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 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용도일 것

가.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나.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2. ----- 3동 이내(도로변 양측 2면 이내로서 후면은 제외함)

3. ----- 맞벽이 되는 부분이 층수를 ----- 것(다만, 상업지역의 맞벽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 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

1.·2. (생략)

② ~ ⑥ (생략)

<신설>

선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 이
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는 지
역 또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
는 구역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 사업 및 재건
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정비
예정구역을 포함한다)이 해제
된 구역

2. 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장이
인정하는 구역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
따라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 계획에 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완화
 5. 협정지역 내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 임차인,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 따라 건축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재료 및 색채
 2.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신 설>

제35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사일로·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⑤ 영 제110조의6제5호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가 요구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실현 계획 및 구체적인 방법과 사업비용 산출근거, 내역서 등 사업계획 관련도서를 말한다.

제36조(결합건축대상지) 법 제77

조의15제3항에 따라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37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저장
탑·건조시설 -----
----- 것(다

것

3. (생략)

② (생략)

제3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②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1년에 1회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총 부과 횟수를 5회로 한다.

<신설>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해당하

만,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로서 원예 등을 위한 연료저장탱크, 곡물저장탑, 축사·양어장 사료보관 저장탑, 액비저장탱크 등은 제외한다.)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 단서 부
분-----

--.

②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부과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③ 영 제115조의2제1항 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영 별표 15 제1호 및 제13호, 제14호를 말한다.

④ ----- 따른 -----

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 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생략)

<신설>

④ (생략)

제37조 (생략)

<신설>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

1. 법 제20조제3항-----

2. (현행과 같음)

⑤ 법 제80조제2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9조 (현행 제37조와 같음)

제40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 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 2. 건축물의 안전관리 계획 수

<신 설>

립 및 안전관리,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4.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6.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7. 「건축물관리법」 제4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기능

제41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 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 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

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전액

3.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
· 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4.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관련 실태조사·검사 및 안전점검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④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건축물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 월 21 일

여 수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박 현



여수시 조례 제1744호

붙임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1부.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 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의2호의 고시원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 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여수시 건축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 건축위원회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제8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기관
6.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기관

②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 연기요청서

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나.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

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

2. 점검기관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점검기관을 해당 관리자 및 건축물관리점검

기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점검기관 지정을 통보 받은 관리자와 점검기관은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국토교통부의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3. 「건축법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
4. 「건축법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창고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자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제4항 각 목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6.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감리자를 지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제출

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나.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

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

2.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3.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해체공사감리계약 및 지정 취소)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 통보서를 받은 관리자와 감리자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관리자는 시장에 다시 감리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1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

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 보상비 지급을 위해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것
2.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복수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시장이 추첨하여 선정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 월 21 일

여 수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박 현



여수시 조례 제1745호

붙임 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745호

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건설기계 시내 진입 방지를 위해 일정한 장소에 임시 공영주기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이용) 공영주기장의 이용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로 한정 한다.

제4조(정기이용의 신청) 〈삭 제〉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영주기장 이용은 무료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이용료 반환) 〈삭 제〉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위탁취소 등에 관하여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공영주기장 이용료 〈삭 제〉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하려는 경우 제5조
에 따른 이용제한 사유의 유무
및 공영주기장의 이용가능 범위
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공영주기장을 이
용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
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반환) 납부된 정기
이용 이용료(이하 “정기이용
료” 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남은 이용기간 중 이용하지
않은 월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모두 반환

2. 남은 이용기간 중 1개월 미
만의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이
용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반환

가.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정기이용을 제
한하는 경우, 그 밖에 정기
이용 허가를 받은 자의 사

제6조(이용료) 공영주기장 이용
은 무료로 한다.

제7조(이용료 반환) 〈삭 제〉

정므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경과한 이용기간의
일수에 별표 1에 따른 일
반이용의 1일 최대 이용료
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별표 1에 따른 정기이
용료 미만인 경우에 그 차
액을 반환

나.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정기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또
는 시장의 사정으로 주기
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월 미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정기이용료를 일
할로 계산하여 반환

제8조(운영의 위탁)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제2항의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하여 그 결
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 「여수시 사
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 월 21 일

여 수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박현수



여수시 조례 제1746호

붙임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746호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제2호가목에 대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이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 나. 제2호가목1)바)·제2호가목2)아)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² 초과 0.5m² 이하는 0.5m²로 0.5m² 초과 1.0m² 미만은 1.0m²로 계산한다.
- 다.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 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1㎡ 초과 1.5㎡ 이하		31만원	41만원	53만원
다) 면적 1.5㎡ 초과 2㎡ 이하		49만원	64만원	84만원
라) 면적 2㎡ 초과 2.5㎡ 이하		64만원	84만원	109만원
마) 면적 2.5㎡ 초과 3㎡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바)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3㎡ 초과 3.7㎡ 이하		19만원	26만원	33만원
다) 면적 3.7㎡ 초과 4.4㎡ 이하		25만원	34만원	44만원
라) 면적 4.4㎡ 초과 5㎡ 이하		32만원	42만원	55만원
마) 5㎡ 초과 6㎡ 이하		48만원	63만원	80만원
바) 6㎡ 초과 8㎡ 이하		64만원	84만원	107만원
사) 8㎡ 초과 10㎡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아)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20천원	30천원	45천원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30천원	40천원	55천원
다) 21장 이상 30장 이하		40천원	50천원	65천원
라) 31장 이상		50천원	60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13천원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28천원
다)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의3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에 1일째부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3)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4) 1년 이상			400만원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0만원	100만원
마.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법조문	과태료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 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1.5㎡ 이하 다) 면적 1.5㎡ 초과 2㎡ 이하 라) 면적 2㎡ 초과 2.5㎡ 이하 마) 면적 2.5㎡ 초과 3㎡ 이하 바)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법 제20조제1항제1호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8만원 12만원 14만원			14만원 31만원 49만원 64만원 80만원 80만원 + 8만원 을 더한 금액	18만원 41만원 64만원 84만원 105만원 105만원 + 10만원 을 더한 금액	23만원 53만원 84만원 109만원 135만원 135만원 + 13만원 을 더한 금액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25만원				
- 1.3㎡ 이상 1.6㎡ 미만	33만원				
- 1.6㎡ 이상 2㎡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58만원				
- 2.3㎡ 이상 2.6㎡ 미만	67만원				
- 2.6㎡ 이상 3.0㎡ 미만	7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8만원	2) 현수막			
- 1㎡ 이상 2㎡ 미만	12만원	가) 면적 3㎡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 2㎡ 이상 3㎡ 미만	14만원	나) 면적 3㎡ 초과 3.7㎡ 이하	19만원	26만원	33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다) 면적 3.7㎡ 초과 4.4㎡ 이하	25만원	34만원	44만원
- 3㎡ 이상 3.7㎡ 미만	22만원	라) 면적 4.4㎡ 초과 5㎡ 이하	32만원	42만원	55만원
- 3.7㎡ 이상 4.4㎡ 미만	25만원	마) 5㎡ 초과 6㎡ 이하	48만원	63만원	80만원
- 4.4㎡ 이상 5.0㎡ 미만	32만원	바) 6㎡ 초과 8㎡ 이하	64만원	84만원	107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사) 8㎡ 초과 10㎡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 5.0㎡ 이상 6.0㎡ 미만	42만원	아)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 6.0㎡ 이상 8.0㎡ 미만	58만원		+	+	+
- 8.0㎡ 이상 10.0㎡ 미만	7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을	을	을
			더한	더한	더한
			금액	금액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3) 벽보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20천원	30천원	4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5천원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30천원	40천원	55천원
- 21장 이상	장당 42천원	다) 21장 이상 30장 이하	40천원	50천원	6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 반한 경우		라) 31장 이상	50천원	60천원	80천원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p>라. 전단</p> <p>1) 일반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p> <p>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p> <p>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p> <p>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p> <p>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p>장당 8천원</p> <p>장당 17천원</p> <p>장당 25천원</p> <p>장당 25천원</p> <p>장당 33천원</p> <p>장당 50천원</p> <p>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3</p> <p>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p> <p>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p> <p>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p> <p>법 제20조제1항 제2호</p> <p>67만원</p> <p>117만원</p> <p>217만원</p> <p>400만원</p>	<p>장당 8천원</p> <p>장당 17천원</p> <p>장당 25천원</p> <p>장당 25천원</p> <p>장당 33천원</p> <p>장당 50천원</p> <p>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p> <p>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p> <p>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p> <p>67만원</p> <p>117만원</p> <p>217만원</p> <p>400만원</p>	<p>4) 전단</p> <p>가) 1장 이상 10장 이하</p> <p>나) 11장 이상 20장 이하</p> <p>다) 21장 이상</p> <p>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p>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p>법 제20조 제1항 제1의3</p> <p>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p> <p>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p> <p>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p> <p>법 제20조 제1항 제2호</p> <p>67만원</p> <p>117만원</p>	<p>장당 8천원</p> <p>장당 10천원</p> <p>장당 13천원</p> <p>장당 17천원</p> <p>장당 22천원</p> <p>장당 28천원</p> <p>장당 25천원</p> <p>장당 32천원</p> <p>장당 42천원</p> <p>장당 8천원</p> <p>장당 10천원</p> <p>장당 13천원</p> <p>장당 17천원</p> <p>장당 22천원</p> <p>장당 28천원</p> <p>장당 25천원</p> <p>장당 32천원</p> <p>장당 42천원</p>
---	--	---	--	--	--

<p>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 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p> <p>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p>	<p>법 제20 조제2항</p>	<p>25만원 40만원 100만원</p>	<p>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p>	<p>217만원 400만원</p>	<p>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 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20조 제2항</p>	<p>25만원</p>	<p>40만원</p>	<p>100만원</p>
<p>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 시한 경우</p> <p>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p>	<p>법 제20 조제1항 제5호</p>	<p>80만원 200만원 500만원</p>	<p>마.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p>	<p>법 제20조 제1항 제5호</p>	<p>80만원</p>	<p>200만원</p>	<p>500만원</p>		

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여서·문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택지공급 조례 폐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 월 21 일

여 수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박 현 

여수시 조례 제1747호

붙임 여수시 여서·문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택지공급 조례 폐지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747호

여수시 여서·문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택지공급 조례 폐지조례

여수시 여서·문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택지공급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